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18세기 한성부 坊契 체계의 정비와 그 배경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사 학 과

정 다 혜

18세기 한성부 坊契 체계의 정비와 그 배경

지도교수 정 요 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사 학 과
정 다 혜

정다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조선의 수도 한성부에서 행정 체계가 정비되는 양상과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배경을 고찰하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행정단위를 편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구 파악과 같은 국가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성부는 국가의 중심지라는 특성상 국가와 왕실이 도시의 정비 및 민호의 활용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성부의 행정 체계 변화의 원인을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상업도시'의 성장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나아가 국가의 행정적 필요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해보고자 했다.

조선후기 한성부에서는 部 아래에 중간 단위인 坊과 기초 행정단위인 契가 편제되는 坊契 체계가 성립하였다. 방계 체계는 도성 안에서부터 편제되기 시작하여 18세기에는 한성부의 도성 밖, 성저십리에서도 정비되었다. 도성 안부터 경강변, 도성 밖 동부와 북부를 방계 체계로 정비한 것은 민호를 동일한 체계로 편제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성부에서 坊契 체계는 한성부의 상황에 부합하게 민호를 동원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조선후기 한성부에서 방계 체계를 사용한 것은 다른 군현에서 군현 아래에 중간 단위인 面과 기초 행정단위인 里가 있는 面里制를 활용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한성부의 戶稅 종류가 다양하고 부세가 이루어지는 기관의 밀도가 높아 지방 군현보다 세분된 단위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전보다 분화된 단위로 민호를 편제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18세기에 한성부가 민호 관리를 강화한 것은 파악하는 호구 수

가 증가한 데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방계 체계가 정비되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18세기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호구 수가 적었던 성저십리의 동부와 북부에서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호구 수가 증가하고 동부와 북부가 오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다만, 한성부의 동북쪽과 서북쪽 지역은 거주민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러한 환경임에도 동부와 북부에서 호구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은 자연적인 동인 이외의 요인으로서 행정적인 필요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한성부가 동부와 북부에서 행정 관리를 강화한 계기 중 하나는 국가의 중요 시설물이 18세기에 이르러 설치되는 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동부와 북부에 왕실의 능묘가 조성되고 군사 방어 시설이 설치되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호를 안집시켜 동원하고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러한 행정적 목적 아래 성저십리에서도 방계 체계가 정비되고 호구 파악이 철저해졌다.

방계 체계가 정비되는 양상으로 볼 때, 정치·경제·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가의 의도가 복합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수도 한성부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영향력은 18세기에 한성부 전 범위에 걸쳐 강화되고 있었다. 국가의 행정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수도의 모습을 18세기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수도로서의 특징은 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18세기 한성부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다.

주요어 : 한성부, 수도, 서울, 성저십리, 18세기, 五部, 坊, 契
학 번 : 2021-24164

목 차

머리말 ····· 1

Ⅰ. 한성부 전체의 坊契 체계 정비 ····· 4

1. 성저십리의 坊契 체계 성립 ····· 4

2. 기초 행정단위로서 契의 편제 원리와 의미 ····· 17

Ⅱ. 동부 및 북부 坊契 체계 일원화의 배경 ····· 29

1. 호구의 증가와 契 편제의 특징 ····· 29

2. 왕실 능묘의 조성과 주변 민호의 관리 강화 ····· 36

3. 군사 방어 시설의 설치와 坊契 체계의 정비 ····· 43

맺음말 ····· 52

참고문헌 ····· 55

부록 ····· 60

Abstract ····· 68

표 목 차

[표 1] 《1611년 호패청 발급 자료》와 《北部帳戶籍》 (1663년)의 坊과 기초 행정단위 편제 ····· 6
[표 2] 《御製修城綸音》과 《戶口摠數》의 部별 坊 개수 ····· 9
[표 3] 《御製修城綸音》과 《戶口摠數》의 部별 契 개수 ····· 10
[표 4] 《戶口摠數》에서 정비된 坊과 소속 契 ····· 11
[표 5] 《戶口摠數》에서 증설된 계 ····· 15
[표 6] 《東國摠錄》과 《戶口摠數》의 部별 호구 수 ····· 29
[표 7] 《東國摠錄》과 《戶口摠數》 사이 部별 호구 증감율 ····· 30
[표 8] 《戶口摠數》의 部별 契 개수와 호구 수 ····· 32
[표 9] 《戶口摠數》와 1895년의 部별 契 개수와 감소율 ····· 34

그 림 목 차

〈그림 1〉 《戶口摠數》에서 정비된 坊 관련 주요 마을 및 시설물 ····· 13
〈그림 2〉 《戶口摠數》에서 증설된 契 관련 주요 마을 및 시설물 ····· 16
〈그림 3〉 18세기 성저십리의 능묘와 陵域 관련 마을 ····· 38
〈그림 4〉 18세기 북한산성·연융대와 관련한 성저십리의 마을과 시설물 ····· 45

머 리 말

조선의 수도 漢城府는 정치·경제·군사·문물의 구심점으로서 국가의 의도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곳이었다. 한성부는 크게 都城과 城底十里[1]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한성부, 특히 성저십리의 기능과 위상은 조선후기에 점차 변하고 있었다. 행정 체계가 정비되고 왕실 및 국가와 관련한 시설물이 증설되며 禁松과 禁葬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등 도성 인근을 관리하는 정책이 강화된 데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성저십리에 민호가 증가하고, 수도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추동된 것이었다.

조선후기 한성부의 변화가 가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坊契 체계의 성립이다. 17세기에 도성 안에서부터 발생한 한성부의 기초 행정단위인 계는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성저십리까지 편제되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상위 단위인 방까지 편제되면서 오부 아래에 방과 계가 편제되는 체계가 성립하였다. 계는 다른 군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한성부만의 독특한 행정단위로서 방계 체계가 성립한 것은 한성부가 민호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조선후기 행정 체계의 정비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향촌사회에서는 里가 편제되고, 里를 관장하는 중간 단위인 面이 정리되면서 面里制가 체계화되고 있었다.[2] 한성부에서도 전국적인 행정 체계 정비와 맥락을 같이 했으나, 한성부의 방계 체계 정비는 지방 군현과는 다른 한성부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방계 체계의 정비가 어떠한 배경과 필요성에서 이루어졌는지 파악함으로써 18세기 수도 한성부의 성격을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

1) 한성부의 관할을 도성 밖 10리까지로 인식하는 사례는 조선초기의 《태종실록》과 《經國大典》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태종 14년(1414)에는 한성부 城中의 노인을 진휼하는데, 그 범위가 京城과 城底十里 안이었다.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6월 9일 갑술.) 《經國大典》에는 京役을 지는 범위이자 분묘를 禁葬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經國大典》 戶典 徭賦; 禮典 喪葬.)

2) 오영교, 2001 《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 硏究》, 혜안, 142쪽.

한성부에서 방계 체계가 정비되는 배경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한성부의 행정적인 필요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전통 시대에 행정단위의 편제는 기본적으로 호구 파악과 같은 국가적 필요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3] 한성부의 방계 체계 정비도 이러한 행정적인 목적에 강조점을 두고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성부의 국가적 필요성에는 국가와 왕실이 활용하는 시설물이 많았고, 특히 18세기 성저십리에서 정치・경제・행정・군사적인 기능이 강화되어 한성부의 민호 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있었다. 즉, 한성부 방계 체계의 정비를 이해하기 위해선 국가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행정적인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성부의 행정편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성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한성부를 '상업도시'로 보는 관점이 주도적이었는데, 도시의 성장을 근대화의 측면에서 본 결과였다.[4] 각 지방에서 상경한 난민들이 용산・서강・마포・두모포 등 '상업'이 발달한 京江 주변에 거주하면서 경강변에 방과 계의 편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5] 한성부 계의 발생과 의미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도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같다. 특히 방계 체계 정비의 의미를 '상업도시'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부여하면서 "중세적 坊民"이 "자유로운 도시민"으로 변모해 나간다고 강조하였다.[6]

18세기 한성부의 변화는 '상업'이나 경제적인 변화에 의해서만 추동

---

3) 19세기 巨濟 舊助羅里에서는 里 편제 변화에 인구 요인보다는 각종 부세 부담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송양섭, 2021 〈19세기 巨濟 舊助羅里의 부세운영과 촌락사회의 동향〉, 《대동문화연구》 114, 400~401쪽.) 조선시대에 호구를 파악하는 것은 자연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요역과 부세를 담당할 직역자를 고려한 것이었다. (김건태, 2003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79~181쪽.) 즉, 행정단위 편제의 요인으로 부세와 같은 국가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민호의 관리, 마을이나 관청의 이해관계 등의 다양한 요인이 행정단위 편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4) 17세기 후반 이래로 19세기까지 서울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며 유럽의 여러 근대도시들과 유사한 성장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본 연구가 있다. (이태진, 1995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 양상〉, 《서울학연구》 4, 32~33쪽.)

5) 손정목, 1988 《朝鮮時代都市社會研究》, 일지사, 37~38쪽; 양보경, 1994 〈서울의 공간확대와 시민의 삶〉, 《서울학연구》 1, 57쪽.

6) 고동환, 2007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351쪽.

된 것이 아니었다. 현재도 그러하나, 특히 전통 시대의 수도는 정치·경제·문물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국가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고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17~18세기에 정비된 방과 계의 상당수가 경강변뿐만 아니라 성저십리의 동부와 북부의 민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 그 반증이다. 동부와 북부에 속한 민호의 생업은 경강변과는 달리 '상업'과는 거리가 멀어 경제적인 변화가 일차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 2010년대에 들어 한성부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 조선후기의 한성부를 '군사도시'로 명칭하는 연구들,[7] 문화적인 관점을 부각하는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8] 이러한 연구 시각은 다양한 방면에서 국가의 의도가 영향을 미치는 수도의 모습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의 변화가 한성부의 행정 관리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坊契 체계가 정비되는 18세기를 중심으로, 변동이 집중되었던 성저십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18세기에 이르러 성저십리에 도성 안과 같은 행정 체계가 성립하는 양상과 그 배경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Ⅰ장에서는 조선후기에 한성부의 기초 행정단위가 된 계가 성저십리까지 편제되고 방계 체계가 성립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Ⅱ장에서는 18세기 동부와 북부에 방계 체계가 성립하는 배경과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와 같은 연대기 사료를 활용하면서 계가 편제된 상황을 알 수 있는 《御製守城綸音》·《戶口摠數》 등 각종 정부 공식 문서, 지리지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지도와 일제강점기의 지형도를 토대로 마을, 시설물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했다.

---

7)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왕무, 2014 〈조선후기 수도권 방위체제의 정비와 군사도시화 경향〉, 《軍史》 90; 이은주, 2017 〈조선후기 연융대 공간의 군사적 기능과 도성 배후기지화〉, 《서울과 역사》 96; 박희진, 2014 〈군제 개편이 17세기 서울의 인구와 상업 발전에 미친 영향〉, 《역사와 현실》 94.)

8) 홍순민, 2021 〈조선후기 白雲洞川 중상류 유역 洞과 坊契의 구성〉, 《서울과 역사》 108.

Ⅰ. 한성부 전체의 坊契 체계 정비

1. 성저십리의 坊契 체계 성립

조선후기 한성부의 행정 체계인 坊契 체계는 17~18세기에 성저십리에서도 점진적으로 정비되었다. 민호[9]가 증가하고 수도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도성 밖의 민호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한성부 성저십리의 민호 관할이 "동쪽은 楊州 松溪院과 大峴[10]에 이르고 서쪽은 揚花渡와 高陽 德水院[11]에 이르며 남쪽은 漢江과 露渡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다.[12] 세종대에 제시된 한성부의 관할은 18세기 영조대에도 유지되었다.[13] 영조 34년(1758)에 한성부와 경기감영의 관할 구역을 구분한 기사에서 동교는 中浪浦, 서교는 磚石峴으로 삼았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14] 한성부의 각종 행정적, 군사적인 관할은 국초부터 18세기까지 사실상 같았다.

행정적, 군사적 목적에서 한성부의 관할이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로 민호를 관리하는 것은 이러한 관할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성저십리 내 모든 마을의 민호 파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

---

9) 본 논문에서는 '민호'와 '호구'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민호'는 실제 거주민, 즉 현재의 인구에 준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호적자료에 기록된 '호구'는 선택적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 인구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10) 양주 송계원과 대현은 현재 중랑천에 이르는 곳으로 볼 수 있다. (김백영 외, 2021 《도시 주거 변천의 파노라마 장위동》, 서울역사박물관, 34쪽.)

11) 덕수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발견된 서울 진관동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재훈, 2019 〈서울 은평뉴타운 '靑覃寺' 명문 기와 출토 건물지의 성격 검토〉, 《서울과 역사》 101, 38~43쪽; 정요근, 2020 〈고려~조선 시대 院 시설 유적의 특성과 院 시설의 유형 분류〉, 《사학연구》 140, 한국사학회, 177~179쪽.)

12)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도 한성부.

13) 한성부와 성저십리의 경역을 정한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한성부와 경기 군현의 禁松이나 禁葬 관할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또한, 군사적으로 한성부와 경기감영의 관할 구역을 구분할 때에도 고려되었다.

14) 《승정원일기》 기사에서는 '磚石峴'으로 표기하였으나, '磻石峴'의 오기로 추정된다. (《승정원일기》 1159책, 영조 34년 8월 6일 기미.)

전기에 성저십리의 민호는 도성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철저하게 관리되었다. 성저십리의 호구 수가 적게 파악된 데에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행정 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차정된 행정관, 즉 管領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호구 역시 적었다. 세종 10년(1428)에 성저십리에는 戶가 1,601호, 口가 6,044구로 파악되고 관령은 15명이 차정되었다. 이는 도성 내 五部에 戶가 16,921호, 口가 103,328구이고 관령이 46명인 것보다 적은 숫자였다.[15] 여기에서 관령은 곧 里正이므로,[16] 당시 성저십리에 편제된 里는 15개 정도였을 것이다. 영조 27년(1751)에 성저십리에 契가 총 113개 편제되어 있었음을 고려하면 세종대에는 편제된 기초 행정단위의 수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17] 즉, 조선전기에 성저십리의 민호 관리는 도성 안보다 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선전기 성저십리의 민호 관리는 五部의 하위 행정단위인 坊이 편제된 범위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에 도성 안에는 모두 방이 편제되었으나, 성저십리에는 방이 편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18] 세조 6년(1461) 이후 성저십리의 민호를 五部에 소속시켰으나,[19] 하위 단위인 방은 편제되지 않았다. 西部의 盤松坊과 盤石坊, 東部의 仁昌坊을 제외하고는 도성 밖에 설치된 방이 없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도성의 서문 밖과 동문 밖을 제외하고는 部 아래에 坊이 편제되는 체계가 도성 안과 같이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방으로 편제되지 않은 민호는 오부의 직할로 관리되었을 것이다.[20]

---

15)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윤4월 8일 기축.

16) 이 기사에서는 管領과 里正을 동일시하였다.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윤4월 8일 기축.)

17) 《御製守城綸音》, 都城三軍門分界總錄.

18) 고동환, 2015 〈조선후기 서울 삼문(三門) 밖 지역의 특성〉, 《서울학연구》 59, 165~167쪽.

19) 《세조실록》 권23, 세조 7년 2월 27일 무술.

20) 세종 15년(1431)에 숭례문 밖 靑坡는 坊에 소속되지 않았고, 경강변에 위치한 高陽郡 富原面과 같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성저십리에서도 방이 편제되지 않으면 면리제에 편입되었다고 본 연구가 있다.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윤4월 8일 기축;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0월 9일 경자; 고동환, 앞의 논문, 166쪽.) 다만, 고양군 부원면의 사례는 地稅와 관련된 사례로, 한성부의 민호 관

17세기 이후에는 성저십리에도 도성 안과 같은 坊과 契의 편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성부 五部의 행정 체계가 도성 밖 성저십리에서도 정비된 것이다. 방과 계는 특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편제된 것이 아니라, 시기와 상황에 따라 행정 관리가 필요한 때에 순차적으로 편제되었다. 17세기 한성부 전체의 방과 계의 편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전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동부와 북부의 일부 자료는 남아있다. 이를 통해 계가 점차 증설되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1611년 호패청 발급자료》[21]와 1663년에 편찬된 《北部帳戶籍》[22]에 기재된 방과 계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1611년 호패청 발급 자료》와 《北部帳戶籍》 (1663년)의 坊과 기초 행정단위 편제

자료	部	구분	坊	기초 행정단위
1611년 호패청 발급 자료	東部	성내	蓮花坊	分六契, 川邊契, 一契, 中路契, 二契, 金寰契, 二三合契, 宗廟洞契, 蓮池契
			健德坊	□契
			崇敎坊	一契, 館奴契, 二契
			(坊 없음)	合契, 琅成吾契, 於義洞契, 崇信坊契,
		성외	(坊 없음)	仁昌坊契, 往十里契, 馬場里, 踏心里, 東籍田, 靑寧里, 中浪浦里, 長位里, 伐里, 牛耳里, 加士里, 陵洞里, □□里(1), □□里(2), □□□
	北部	성내	鷹化坊	(契 없음)

리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세조대에 이미 성저십리의 민호가 오부에 소속되었으므로 오부의 직할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21) 《1611년 호패청 발급자료》는 咸陽 密陽朴氏家에 소장된 호패 필사본으로, 知足堂 朴明榑(1571~1639)가 공조 좌랑에 재직하던 시기에 호패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호패 지면에 "萬曆 39年"이라 표기된 데에서 1611년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고문서자료관 홈페이지에는 〈1611년 박명부(朴明榑) 호구자료(戶口資料)〉로 사료명을 기재했으나, 호패청에서 발급한 자료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1611년 호패청 발급자료》로 표기하였다. 글자 판독은 김소은의 논문을 참고했다. (김소은, 1999 〈1610년 호패청 작성 치부자료〉, 《고문서연구》 1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고문서집성 119 咸陽 安義 密陽朴氏 朴明榑宗家 古文書》.)

22) 《北部帳戶籍》.

			陽德坊	(契 없음)
			嘉會坊	(契 없음)
			安國坊	(契 없음)
			觀光坊	中學契
			鎭長坊	(契 없음)
			義通坊	巡新門契
			順地坊	五井里契, 繕工牌契, 司宰監契
			俊□坊	織造洞契
		성외	(坊 없음)	陳伊古介, 洞橋里, 會掌里, 望遠亭, 城北里各色赤, 貴林事, 甑山里
1663년 북부장 호적	北部	성외	(坊 없음)	阿耳古介契, 衍禧宮契, 加佐洞契, 水色里契, 城山里契, 細橋里契, 合掌里契, 望遠亭契, 弘濟院契, 汝義島新契, 延曙契, 甑山里契, 新寺洞契, 梁哲里契, 末屹山契, 造紙署契

※ 밑줄 친 지명은 두 자료에 모두 기재된 지명이다.

※ '□'는 판독할 수 없는 글자이다.

※ '기초 행정단위'는 마을[洞・村], 里, 契를 통칭한다.

두 자료는 17세기 초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약 50년 동안 도성 안팎의 행정 편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17세기 초반에 이미 도성 안에서는 대부분 계가 편제되었고 방 아래에 계가 편성되는 체계도 형성되었다. 다만, 도성 안 북부는 방 아래에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도성 안 북부의 특징으로, 18세기 중반 영조대까지도 북부에는 사실상 방과 계가 동일시되고 있었다.[23]

현존하는 자료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도성 밖의 북부에 한정되어 있다. 도성 밖 북부는 대부분 1611년에는 계가 아닌 里가 편제되어 있었다. 도성 안에 계가 편제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7세기 초반에는 도성 안과 밖의 체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東

23) 이는 현재의 북촌에 해당하는 북부의 일부 방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계의 개수가 적고 방과 동일시되며 변화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방역을 부담하지 않는 민호가 많고 주민 변화가 적기 때문에 굳이 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연구가 있다. (정정남, 2015 〈18세기 이후 한성부 북부 6坊(현 북촌)의 주거 停滯的 구조〉, 《서울학연구》 61, 134~140쪽.)

籍田이나 陳伊古介, 望遠亭과 같이 里 명칭도 쓰지 않고 단순히 밭이나 고개・정자와 같은 지형지물의 명칭으로만 기초 행정단위의 명칭이 표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북부장호적》에서는 기초 행정단위명이 1611년과는 다르게 기재되었다. 《북부장호적》에 기록된 계는 모두 도성 밖의 민호를 관리하기 위해 편제된 것이다. [표 1]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 1611년에는 里나 마을명으로 표시되었으나, 1663년에 이르러서는 계로 기초 행정단위명이 통일되었다. 약 50년 기간에 걸쳐서 도성 밖의 기초 행정단위명이 도성 안과 동일해진 것이다. 이는 곧 도성 밖과 도성 안의 행정 체계가 같아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계가 편제되는 기초 행정단위의 수도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북부장호적》에는 1611년의 자료에 기재된 것보다 대략 2배에 해당하는 개수의 기초 행정단위가 표기되었다. 점차 편제되는 계의 수가 증가하면서 도성 안과 같은 체계로 정비되고 있던 것이다. 다만, 17세기 중반에도 아직 도성 밖 북부에는 방이 편제되지 않아 도성 안과 같이 部 아래에 중간 단위인 坊과 기초 행정단위인 契가 있는 체계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18세기에는 행정 체계의 완성도가 17세기보다 높아졌다. 우선, 18세기 중반까지 里名이나 마을명을 계로 바꾸는 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 또한, 18세기 후반에는 방이 성저십리의 모든 부에 편제되었다.[24] 한성부의 방계 체계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성저십리의 민호를 모두 포괄하게 된 것이다. 18세기 중후반까지 만들어진 방과 계의 전체적인 틀은 갑오개혁 때까지 대부분 유지되었다. 계가 신설되거나 폐지되기도 했으나 방계 체계 자체가 변화하지는 않았다.

18세기에 편제된 방과 계의 전체적인 양상이 확인되는 자료는 영조 27년(1751) 《御製守城綸音》[25]과 정조 13년(1789)의 《戶口摠數》이다.[26]

---

24) 영조대에 남부 豆毛坊・漢江坊・屯之坊, 서부 龍山坊・西江坊이 신설되었는데, 이 5개 방은 모두 경강변의 민호를 관리하였다. 즉, 이미 영조 27년(1751) 이전에 경강변은 부-방-계 체계가 성립했던 것이다. (고동환, 1998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62~64쪽.)

25) 《御製守城綸音》, 都城三軍門分界總錄.

이 두 자료를 비교하여 약 30년 동안 坊과 契에서 모두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별 마을의 민호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상하 편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편제의 의도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각 사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각 사례를 비교하기에 앞서 우선 각 부별로 방과 계의 개수를 비교하면 다음 [표 2], [표 3]과 같다.[27]

[표 2] 《御製修城綸音》과 《戶口摠數》의 部별 坊 개수

部	구분	坊 개수		변동 사항
		《어제수성윤음》	《호구총수》	
中部	성내	8	8	0 (0/0)
	소계	8	8	0 (0/0)
東部	성내	4	5	+1 (+1/0)
	성외	2	2	0 (0/0)
	소계	6	7	+1 (+1/0)
南部	성내	8	8	0 (0/0)
	성외	3	3	0 (0/0)
	소계	11	11	0 (0/0)
西部	성내	7	7	0 (0/0)
	성외	2	2	0 (0/0)
	소계	9	9	0 (0/0)
北部	성내	9	9	0 (0/0)
	성외	0	3	+3 (+3/0)
	소계	9	12	+3 (+3/0)
합계	성내	36	37	+1 (+1/0)
	성외	7	10	+3 (+3/0)
	전체	43	47	+4 (+4/0)

※ 변동 사항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증가한 개수/감소한 개수)이다.

26) 《戶口摠數》 1책, 漢城府.

27) [표 2], [표 3]에서 방과 계의 성내외 구분은 《어제수성윤음》에서 방을 성내외로 구분한 것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御製守城綸音》, 都城三軍門分界總錄.) 정조대에 신설된 방은 정조 12년(1788)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승정원일기》 1647책, 정조 12년 10월 13일 신축.) 이하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방과 계의 성내외 구분의 근거도 같다.

[표 3] 《御製修城綸音》과 《戶口摠數》의 部별 契 개수

部	구분	契 개수		변동 사항
		《어제수성윤음》	《호구총수》	
中部	성내	91	91	0 (+2/-2)
	소계	91	91	0 (+2/-2)
東部	성내	19	19	0 (+2/-2)
	성외	19	22	+3 (+3/0)
	소계	38	41	+3 (+5/-2)
南部	성내	53	53	0 (0/0)
	성외	18	18	0 (0/0)
	소계	71	71	0 (0/0)
西部	성내	39	39	0 (0/0)
	성외	52	52	0 (+2/-2)
	소계	91	91	0 (+2/-2)
北部	성내	13	14	+1 (+1/0)
	성외	24	30	+6 (+6/0)
	소계	37	44	+7 (+7/0)
합계	성내	215	216	+1 (+5/-4)
	성외	113	122	+9 (+11/-2)
	전체	328	338	+10 (+16/-6)

※ 변동 사항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증가한 개수/감소한 개수)이다.

18세기 한성부 방계 체계 변화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변화가 많지 않은 가운데 도성 밖 동부와 북부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위 [표 2]와 [표 3]에서 알 수 있듯, 방과 계 모두 도성 안보다는 도성 밖에서 정비가 많이 이루어졌다. 방의 경우, 도성 안팎을 통틀어 모두 방이 신설되기만 하고 원래 있던 방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동부와 북부에서만 방이 새롭게 편제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계도 전체적으로 새롭게 편제된 경우가 많고 도성 안보다는 도성 밖에 변화가 집중되었다. 특히 도성 안팎에서 신설된 계와 폐지된 계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표 3]의 '변동 사항'에서 추가된 계와 폐지된 계의 개수를 비교해 알 수 있다. 도성 안에서는 신설된 계(5개)와 폐지된 계(4개)의 개수가 비슷한 것과 달리, 도성 밖에서는 신설된 계(11개)가 폐지된 계(2개)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즉, 도성 안에서는 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와 함께 폐지되는 경우

도 많았던 것과 달리, 도성 밖에서는 대부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변화가 집중된 部는 방과 마찬가지로 동부와 북부였다. 이를 통해 18세기 방계 체계의 변화는 서부와 남부보다는 동부와 북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양적인 차이만으로는 방이나 계의 신설, 폐지 여부와 요인을 알기 어려워 각 계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방과 계의 변동 양상은 크게 방계 체계의 변화와 契 자체의 변화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방계 체계의 변화는 방 없이 계만 있는 경우 방을 만들어 소속시킨 경우였다. 즉, 성저십리에도 방과 그 아래에 계가 소속되는 체계가 정비되었다. 이는 《호구총수》에 새롭게 생긴 방에서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방이 아예 없었으나 새롭게 방을 만들어 원래 있던 계를 소속시킨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기존부터 방은 있었으나 계와의 소속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속 관계를 정리한 경우이다. 이렇게 정비된 방과 그 방에 속한 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戶口摠數》에서 정비된 坊과 소속 契

部	구분	坊	坊 신설 여부	소속된 契
東部	성내	景慕宮坊	O	一契, 二契
	성외	崇信坊	X	新設契, 伐里契, 加五里契, 水踰村契, 安巖洞契, 陵洞契, 沙阿里契, 牛耳契
		仁昌坊	X	往十里一契, 往十里二契, 私契, 淸凉里契, 踏十里契, 祭基里契, 長位里契, 中浪浦契, 典農里契, 馬場里契
北部	성외	常平坊	O	訓倉契, 禁倉契, 御倉契, 宣惠廳契, 經理廳契, 造紙署契
		延禧坊	O	細橋里一契, 細橋里二契, 加佐洞一契, 加佐洞二契, 望遠亭一契, 望遠亭二契, 望遠亭三契, 阿峴契, 延禧宮契,

				甑山里契, 城山里契, 水色里契, 鵂巖里契, 舊里契, 合井里契, 汝矣島契
		延恩坊	O	弘濟院契, 梁哲里契, 佛光里契, 葛古介契, 驛契, 私契, 新寺洞契, 末屹山契

동부의 경모궁방을 제외하면 정조대에 정비된 방은 모두 동부와 북부의 도성 밖에 해당하였다. 경모궁방은 정조대에 설치된 경모궁과 관련한 방이었다. 경모궁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이었을 것이다.[28] 도성 밖에서 동부는 본래부터 있던 방이 포괄하는 계의 개수가 많아진 것과는 달리, 북부는 아예 방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이는 본래 북부는 도성 안에만 방이 설치되었으나,[29] 17~18세기에 이르러 도성 밖에도 방을 설치하여 기존에는 부의 직할로 관리되던 도성 밖 민호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과 계의 소속 관계 정비는 정조 12년(1788)에 관할 방이 없는 계의 명칭을 정하면서 이루어졌다.[30] 조선전기에는 성저십리의 행정 체계가 도성 안과 같지 않았으나 17세기 초반부터 점차 하위 단위로서 계가 정비되고 이 때에 이르러 도성 내의 체계에 맞추어 상위 단위로 방을 편제한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에 도성 안과 같이 五部의 공식 체계에 맞추어 방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작용한 결과였을 것이다. 행정 체계가 정비되는 것은 민호에 대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정조대의 행정 체계 정비는 성저십리까지 방과 계로 편제하면서 남부와 서부에 비해 방계 편제가 늦었던 동부와 북부에서도 방계 체계를 정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8) 정조 5년(1781)에 경모궁 인근에 민호를 모집해 들인 뒤 정조 6년(1782)에 방을 편제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12월 13일 신사; 《승정원일기》 1647책, 정조 12년 10월 16일 갑진.)

29) 북부에서 관할하던 도성 내의 방은 順化坊・安國坊・嘉會坊・義通坊・觀光坊・鎭長坊・陽德坊・俊秀坊・廣化坊이었다. (《戶口摠數》 1책, 漢城府.)

30) 《승정원일기》 1647책, 정조 12년 10월 13일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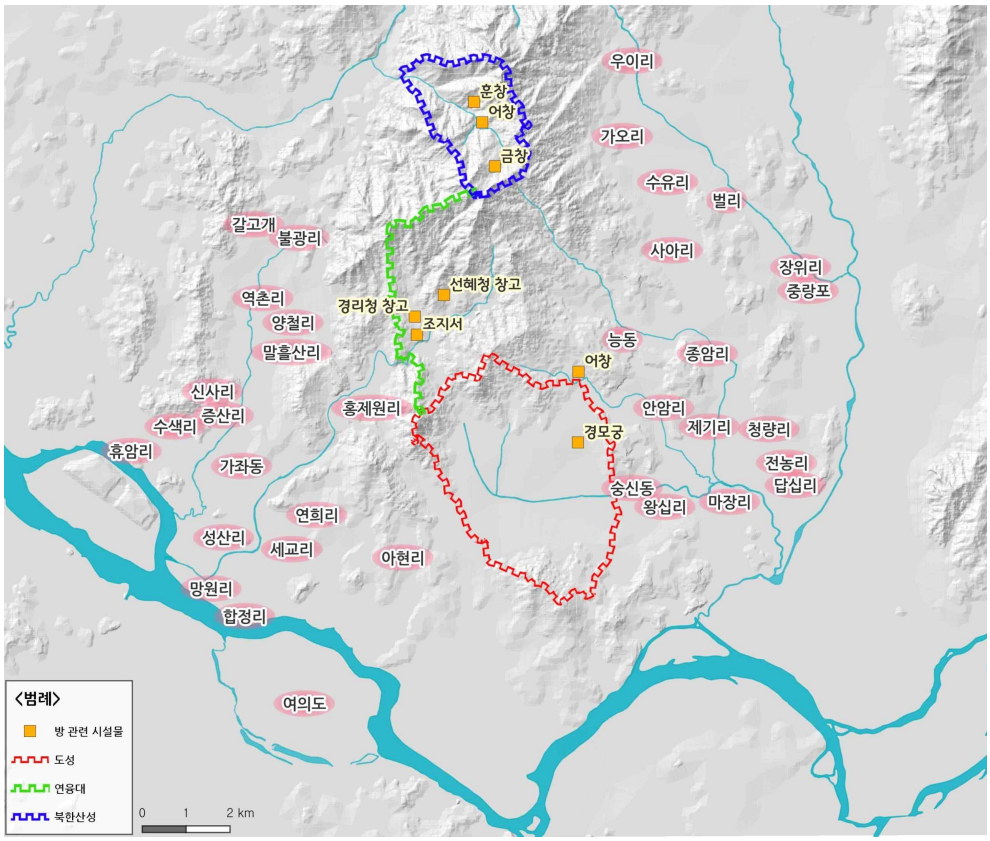

<그림 1> 《戶口摠數》에서 정비된 坊 관련 주요 마을 및 시설물

정조 12년(1788)에 정비가 이루어진 방은 경강변 이외에 성저십리에 있는 다른 마을들의 민호를 중점적으로 포괄하였다. (<그림 1> 참고.[31]) 북부 연희방의 망원정, 여의도와 같은 경강변의 외곽과 도성의 동북부나 서북부에 있는 마을의 민호가 대상이 된 것이다. 이는 '三江'이라 불리었던 한강·용산강·서강을 제외한 나머지 성저십리의 마을에서도 민호를 방과 계로 편제한 것이었다.[32] 이로써 성저십리의 민호도 모두 계

31) <그림 1>에서 배경지도의 제작과 계 관련 시설물, 마을의 위치 비정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 (《大東地志》; 《東國輿地備考》; 《東國輿地志》; 《新增東國輿地勝覽》; 《韓國 五萬分之一 地形圖》; 《大東輿地圖》; 〈都城大地圖〉; 〈都城圖〉; 〈司僕寺箭串牧場圖〉; 〈四山禁標圖〉) 이하 그림도 같다.

32) 조선시대 경강변을 일컫는 지역은 조선후기 시기에 따라 지칭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되었다. 18세기 이전에는 '三江'이라 하여 한강·용산강·서강을 지칭하였

로 편제되고 방의 관할 아래에 두어졌다.

18세기에 발생한 두 번째 변화는 계 자체의 변화이다. 영조대에서 정조대에 이르는 동안 계는 신설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였다. 혹은 같은 계이지만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다. 우선 계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는 도성 안에만 해당되었다. 北部 觀光坊・鎭長坊・陽德坊・俊秀坊・廣化坊은 17세기까지도 소속된 계 없이 방으로만 운영되다가 계를 설치하였다. 이 때 설치된 계는 사실상 방과 동일한 것으로, 방과 그 아래에 계가 소속되는 체계를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정조 12년(1788)에는 북부에 계는 있으나 이름이 없어 坊名을 契名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洞의 俗名으로 계의 이름을 정하게 하였다.[33] 즉, 도성 내 북부의 경우 원래 있던 계의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계가 폐지되는 경우는 도성 안에서는 中部 白笠廛契와 黑笠廛契, 東部 崇敎一契・建德坊契, 도성 밖에서는 西部 靑坡五契・御營廳倉契가 해당된다. 중부의 두 시전계는 도성 내 시전의 변동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4] 동부의 두 계의 경우, 경모궁방이 신설된 것과 연관이 있다. 경모궁방이 새롭게 생기자 원래 있던 숭교일계와 건덕방계의 민호가 경모궁방에 소속되면서 경모궁계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35] 마지막으로 서부의 경우, 어영청창계는 본래 경강변에 위치했던 어영청 창고가 도성 안 동부로 옮겨오면서 계가 없어졌다.[36] 도성 안으로 창고를 옮긴 이후

다면, 18세기 중엽에는 마포・망원정을 더해 '五江'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18세기 후반에는 두모포・서빙고・뚝섬이 추가되어 '八江'으로 불리었다. (고동환, 1998 앞의 책, 215~221쪽.) 본문에서 일컫는 '경강변'은 18세기 중엽에 확대된 한강・용산강・서강・마포・망원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승정원일기》 1647책, 정조 12년 10월 16일 갑진.

34) 19세기 자료인 《萬機要覽》에는 白笠廛契와 黑笠廛契가 기재되어 있는데, 《만기요람》에 기재된 계는 《어제수성윤음》과 동일하므로 《어제수성윤음》의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萬機要覽》 군정2, 訓鍊都監 守城字內.)

35) 경모궁방과 경모궁계는 경모궁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募民된 민호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본 연구가 있다. (유슬기, 2017 〈서울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신흥부촌 형성 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2쪽.) 그러나 기존부터 동부에 소속된 민호가 경모궁이 설치된 이후 경모궁방에 소속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숭교일계, 건덕방계의 명칭이 경모궁계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1502책, 정조 6년 1월 21일 무오.)

36) 《승정원일기》 1170책, 영조 35년 윤6월 30일 무신.

창고와 관련한 役을 수행하지 않게 된 서부의 어영청창계가 폐지된 것이다. 청파오계는 없어진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서부의 민호가 정리되면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8세기에는 계가 폐지되는 것에 비해 신설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의 계가 2개의 계로 분할·증가하거나 아예 새로운 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아래 [표 5]는 계가 증설된 사례를 정리한 표이다.

[표 5] 《戶口摠數》에서 증설된 계

部	구분	坊	契		변동유형
			《어제수성윤음》	《호구총수》	
中部	성내	長通坊	紙廛契	紙廛一契, 紙廛二契	분할
			履廛契	鞋廛一契, 鞋廛二契	분할
東部	성내	景慕宮坊	-	一契, 二契	신설
	성외	崇信坊	-	鐘巖里契, 御倉契	신설
		仁昌坊	往十里驛契	往十里一契, 往十里二契	분할
西部	성외	龍山坊	瓮里上契, 瓮里下契	瓮里上契, 瓮里中契, 瓮里下契	분할
		西江坊	水溢里契	上水溢里契, 下水溢里契	분할
北部	성내	順化坊	司宰監契	司宰監上牌契, 司宰監下牌契	분할
	성외	常平坊	-	訓倉契, 禁倉契, 御倉契	신설
		延禧坊	細橋里契	細橋里一契, 細橋里二契	분할
			加佐洞契	加佐洞一契, 加佐洞二契	분할
			望遠亭一契, 望遠亭二契	望遠亭一契, 望遠亭二契, 望遠亭三契	분할

계가 증설된 것은 두 가지로 양상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존에 있던 계가 일·이계 혹은 상·중·하계 등으로 분할된 것이다. 망원정 '삼' 계, 옹리 '중' 계와 같은 명칭에서 이를 알 수 있다.[37] 기존의 계가 이분 혹은 삼분된 요인은 민호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 부세와 같은 정책적인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리되는 사례는 아래의 <그림 2>에서 보이듯, 경강변이나 도성 동문 밖 인근의 마을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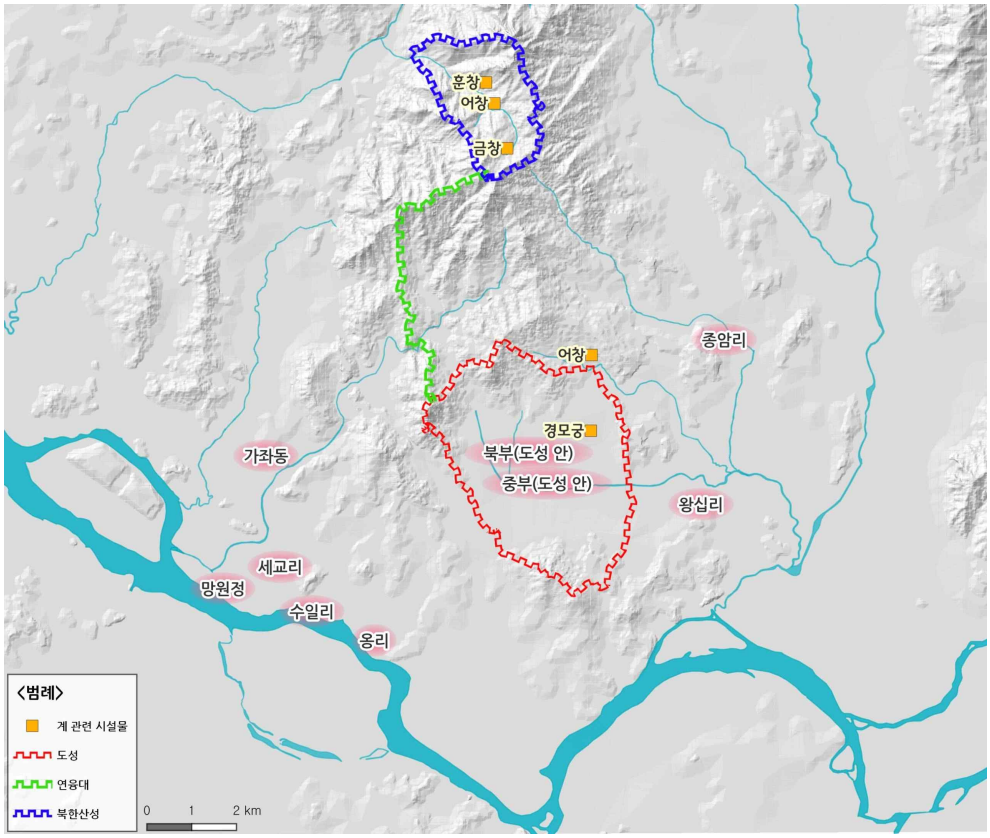

<그림 2> 《戶口摠數》에서 증설된 契 관련 주요 마을 및 시설물

37) 일·이계와 같은 사례들은 원래 있던 계가 분리된 것이다. 영조 12년(1736)에 西氷庫 땅에 거주하는 西氷一契 존위가 "本洞은 전부터 두 洞으로 나뉘어 一·二契가 있었다"고 언급한 데에서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 882책, 영조 12년 3월 17일 신해.)

두 번째 양상은 새로운 계가 생겨나는 경우이다. 신설되는 경우는 모두 동부와 북부에 속하였다. 동부에서는 종암리계와 같이 마을을 단위로 민호를 편제하였다. 이 역시도 민호의 증가, 정책적인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다. 또한, 어창계와 같이 새롭게 조성된 국가의 창고 시설과 관련한 계가 생기기도 했다. 북부의 경우 북한산성과 관련된 계가 신설되었는데, 훈창계·금창계·어창계의 명칭에서 숙종대에 건설한 북한산성 내의 창고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진 성저십리의 행정 체계 정비는 18세기 후반 정조대에 이르러 도성 안과 같은 방계 체계로 정리되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후반까지 성저십리에 계가 편제되고 18세기 후반에는 모든 계가 방에 소속된 것이다. 이러한 18세기 방계 체계의 정비는 동부와 북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계가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던 도성 안과는 달리 성저십리에서는 계가 신설 혹은 분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역시 동부와 북부에 집중되었다. 순차적으로 방계 체계가 정비되면서 18세기에 성저십리, 특히 동부와 북부의 민호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18세기에 이르러 동부와 북부에서 다른 부보다 늦게 변화가 발생한 계기를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기초 행정단위로서 契의 편제 원리와 의미

17~18세기에 도성 안팎의 행정 체계는 部 아래에 중간단위인 坊과 기초 행정단위인 契를 편제하는 것으로 일원화되었다. 이는 도성 안에서 발생한 방계 체계가 성저십리에도 정비된 결과였다. 성저십리에서 방계 체계가 성립하는 시기는 부마다 달랐다. 이렇게 도성 밖이 도성 안과 같은 체계로 순차적으로 정비되는 변화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선 먼저 도성 안에서 계를 기초 행정단위로 삼은 배경과 그 편제 원리를 살펴보고 성저십리의 상황과 비교해야 할 것이다.

17세기 이전 한성부의 기초 행정단위는 里였다. 조선전기 한성부의 행정단위인 방과 리는 고대 중국의 도성 제도인 坊里制를 모델로 한 것으로, 지방의 面里와는 차별성을 가졌다.[38] 조선전기부터 한성부의 행정단위가 지방과 달랐음은 《經國大典》에 규정된 戶口式에서 알 수 있다. 한성부에서는 "某部某坊第幾里"로 호구를 기재한 데에 비해 지방에서는 "某面某里"로 기록하였다.[39] 도성과 그 인근을 포괄하는 五部는 지방과는 다른, 특수한 행정구역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한성부의 특수한 坊里 체계는 점차 성저십리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1절에서 확인하였듯, 16세기까지도 도성의 서문 밖과 동문 밖, 경강변에 위치한 마을의 민호만 방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방리제가 한성부에서 행정적 실효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재고할 문제이다. 조선전기의 里는 일정한 호구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구성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 리가 구성되기는 어려웠다.[40] 이는 지방뿐만 아니라 한성부에서도 해당되었을 것이다. 세종 10년(1428)에는 100家를 1里로 하여 里正을 두고자 했으나, 투입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하여 모든 리에 리정을 두는 계획은 무산되었다.[41] 호구 수를 기준으로 리를 설정하고자 했으나, 리를 세분하여 많이 편제하기 어려웠고 모든 리에 행정관을 투입할 수도 없던 것이다. 또한, 국초부터 도입하고자 했던 隣保法·五家統制가 완비되지 못해 이를 기반으로 한 리가 정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42] 즉, 조선전기의 리는 호구 수를 기준으로 편제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이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

---

38) 방리제는 唐代에 율령에 명시되었다. 당대의 방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성곽 내 봉폐식의 구역 단위를 일컫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里는 호구 파악 단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坊正은 방의 치안을 관장하는 한편, 里正은 호구부역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 (박한제, 2019 《중국 중세도성과 호한체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92~293쪽.)

39) 《經國大典》 禮典, 戶口式.

40) 박진우, 1988 〈朝鮮初期 面里制와 村落支配의 강화〉, 《韓國史論》 2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39쪽.

41)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윤4월 8일 기축.

42) 효종 즉위년(1649)에는 《經國大典》에 기재된 '五戶一統'이 오랫동안 폐지되었다고 하였다. (《효종실록》 권2, 효종 즉위년 11월 11일 병인.)

조선전기 한성부의 기초 행정단위였던 리는 조선후기에 전국적으로 행정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한성부의 민호가 증가하면서 점차 계로 대체되었다. 17세기 초반에는 이미 리가 아닌 계가 행정단위로 사용되고 있었다. 광해 3년(1611)에 작성된 《1611년 호패청 발급자료》는 계를 統戶 단위로 구성한 것이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본 자료에서는 한성부 동부와 북부에서 방과 계를 단위로 호패 발급 인원을 파악했는데, 이 때 도성 안의 각 방, 계의 명칭과 統數를 기재하였다. 17세기 초반에는 도성 안에서는 방과 계를 행정단위로 사용했던 것이다.

한성부에서 계의 편제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리가 가지고 있던 행정 기능을 대체하였다. 17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계와 리가 혼용되었으나 18세기에는 계가 유일한 기초 행정단위가 되었다. 이는 戶口單子式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18세기 《典律通補》의 〈戶口單子式〉에서는 "某部某坊某契"로 기재하여 계가 기초 행정단위임을 명시하였다.[43] 이러한 변화 속에서 리의 행정적인 역할은 계로 대체되고 계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계가 기초 행정단위로 사용되면서 部 아래에 중간단위인 坊과 기초 행정단위인 契를 두는 것이 한성부의 공식 행정체계가 되었다.[44] 여기에서 공식 직임이 있는 단위는 부와 방까지였다. 상위 단위인 부에는 정식 품관이 배정되었는데, 《經國大典》에서 각 부마다 종6품 主簿 1員과 종9품 參奉 2員이 지정되었고 《續大典》에서는 종6품 都事 1員과 종8품 奉事 1員이 배치된 데에서 알 수 있다.[45] 방의 최고 행정책임자인 管領에

43)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戶口單子式.

44) 15세기 중반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와 16세기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五部가 관할하는 행정단위가 坊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방이 조선전기 한성부의 최말단 행정조직이고 행정 편제 상으로는 방의 하부에 里가 있었으나 단순히 호구의 편제 단위로서 공식적인 행정 관리 체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세종실록》 권148, 京都 漢城府;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 京都 下; 고동환, 2007, 앞의 책, 295쪽.) 그러나 조선전기 호구식에서 리로 호적을 기재했다는 점에서 리를 조선전기 한성부의 기초 행정단위로 볼 여지도 있다. 17세기 이후의 호적에서는 坊의 하부 단위로 契가 기재되고 있으며 18세기 자료인 《戶口摠數》 등에서 契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에는 공식적인 행정단위가 契였음이 명확하다. (《戶口摠數》 권1, 漢城府.)

게는 세종 10년(1428)에 隊長・隊副 등의 직임을 주었다.[46] 즉, 품관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인을 받는 자리였던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관령은 방마다 1명씩 두는 것으로 법전에 규정되어 있어 국가적 공인력을 가지고 있었다.[47]

부와 방에 공인받은 직임이 있는 인원이 배치되었던 것과 달리 계의 최고 행정관리자인 尊位는 공식 직임은 아니었다.[48] 비록 존위가 공식 직임은 아니었으나, 계 안에서 자치적으로 차정되어 기초 행정단위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조 20년(1796) 壯勇營契에 대한 절목이 담긴 《壯勇營故事》에 존위의 역할을 설명한 데에서 알 수 있다.[49] 존위의 역할은 민호의 犯禁 단속, 도로 修治・掃除・掃雪・도랑 준설・坐更・불 끄는 일 등 방역자 관리, 統案 관리, 호적 보고 등이었는데, 계의 민호 관리・호적 파악 및 보고・坊役 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한성부 및 오부와 각 가호 간을 잇는 중간 행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는 지방 군현의 里에 里任이 있어 부세나 마을 자치와 관련한 책임을 진 것과 유사하다.[50]

다만, 한성부의 공식적인 행정 체계는 부-방-계였으나, 실제 행정업무가 반드시 이 체계에 따라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 정조 15년(1791)에는 〈尊位成冊〉을 편찬하면서 부-방-계의 명령 전달 체계에 대해 논했는데, 긴중한 일이 있으면 계에서 바로 部로 고하게 하였다.[51] 효율적인

---

45)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從六品衙門 五部; 《續大典》 吏典, 京官職 從六品衙門 五部.

46)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윤4월 8일 기축;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윤4월 27일 무신.

47) 《經國大典》 戶典, 戶籍.

48) 尊位, 任掌 등 계의 최고 행정책임자를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尊位로 통칭한다. (《승정원일기》 1598책, 정조 10년 4월 12일 을유.)

49) 《壯勇營故事》 6책, 병진년 12월 22일.

50) 里의 책임자인 里正은 賦稅徵收, 軍・徭役差拔, 奴婢推刷, 犯法者 摘發 등의 실무를 맡고 있었다. (오영교, 앞의 책, 185쪽.) 한편, 巨濟 舊助羅里에서는 里任은 주로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반면, 洞首 혹은 尊位는 마을의 대내적인 일을 운영했다고 보기도 한다. (전민영, 2017 〈19세기 巨濟 舊助羅里 마을고문서와 공동생활 방식 - 旅客主人・漁條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 《古文書硏究》 51, 242쪽.) 한성부의 존위는 계의 대내적・대외적 업무를 모두 관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 수행을 위해 부에서 계로 직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을 것이다.[52] 그러나 방은 정부에서 공인받은 직임이 존재하는 행정단위로서, 계와는 체계상 명백한 소속 관계가 있었다. 정조 12년(1788)에 방계 체계를 정비하면서 계를 방에 "속하게 한다[屬之]"라고 한 점에서 알 수 있다.[53] 방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이러한 행정 소속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한성부에서 기초 행정단위명을 리에서 계로 바꾸어 방계 체계를 정비한 이유는 17~18세기에 전국적으로 행정 체계가 정비되는 흐름 속에서 한성부만의 특수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7세기는 전국적으로 행정단위가 정비되던 시기로, 단일한 행정 체계로 정리되는 것은 한성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었다. 비록 지역마다 명칭은 달랐으나 기초 행정단위인 里가 面의 하부 단위로 편제되는 등 행정단위의 위계 정리는 지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54] 또한, 호구 편제의 기반이 되는 五家作統制도 전국적으로 정비되고 있었다.[55] 이렇게 일원적인 행정 체계가 정비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성부도 체계가 변화하고 있었다.

시대적 상황은 전국적으로 동일했으나 한성부의 구체적인 정비 방향은 다른 군현과는 달랐다. 지방 군현에서 대부분 面과 그 아래의 하부 단위로 里를 두었던 것과 달리, 한성부에서는 坊과 그 하부 단위로 契를 두었다. 한성부에서는 리가 아닌 계와 같은 단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계의 특징과 관련이 있었다.

---

51) 《승정원일기》 1689책, 정조 15년 4월 4일 무신.

52) 예를 들어, 정조 10년(1786)에 民丁을 出役시키는 일에 대해 한성부에서 조사하는데 해당 部의 書員과 각 契의 任掌만 불러 조사하였다. 이 때 방의 존임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승정원일기》 1598책, 정조 10년 4월 12일 을유.)

53) 《승정원일기》 1647책, 정조 12년 10월 13일 신축.

54) 18세기까지 지방의 군현 내부에서는 군현-면-리라는 행정 체계가 성립하였다. (오영교, 1994 〈17世紀 鄕村對策과 面里制의 運營〉, 《동방학지》 8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47쪽.)

55) 숙종 원년(1675)에 반포된 〈五家統事目〉은 호패법과 향약제를 실시하는 기반이 됨과 동시에 良役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행되었다. 〈오가통사목〉의 시행으로 당시 추진되고 있던 面里制 편제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오영교, 앞의 책, 234쪽) 이는 한성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정조 20년(1796) 《壯勇營故事》에서 〈오가통사목〉에 따라 계를 구성한 데에서 알 수 있다. (《壯勇營故事》 6책, 병진년 12월 22일.)

계가 리와 가장 다른 점은 계는 다양한 인적 구성과 범위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 한성부의 계의 명칭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마을[洞・村]명이나 里名, 지형지물의 명칭뿐만 아니라 인명・시전명・관사명으로 이루어진 계가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南部 薰陶防 鑄字洞契와 같이 해당 마을[洞・村]의 명칭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東部 昌善坊 小川邊契와 같이 지형지물의 명칭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마을 명칭과는 큰 관련 없이 中部 貞善坊 金萬年契처럼 인명으로 이루어진 계나 中部 長通坊 原州主人契, 中部 貞善坊 把子廛契와 같이 경주인이나 시전을 명칭으로 삼은 계도 있었다. 中部 澄淸坊 漢城府內契와 같이 관청이 계의 명칭으로 자리 잡은 사례도 있다.

한성부에서 호구를 편제하는 단위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다른 군현의 면리제와는 다른 특징이다. 17세기 이후 지방 군현에서는 기본적으로 호구나 부세 등에 따라 里를 편제하였는데, 洞・村 등 마을이 리를 편제하는 단위가 되기도 하였다.[56] 군현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편제 방법은 달랐지만, 마을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달리, 한성부의 기초 행정단위인 계는 마을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지방 군현과 마찬가지로 호구를 편제하는 기본 원리는 〈五家統事目〉에 기초했지만, 편제가 이루어지는 민호의 범위는 마을 내에서 세분되기도 하고, 마을 범위를 벗어나기도 했다. 즉, 한성부의 계는 마을을 단위로 민호를 편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절대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한성부에서 호구를 편제할 때 마을 이외의 요소를 고려했던 이유는 한성부의 부세 정책과 관련이 있다. 한성부에서는 戶役이 주요한 부세가 되었기 때문에 田結을 비롯한 다른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戶口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17세기 이후 대동법의 실시로 지방 군현에서 戶役과 貢物이 토지세로 대체되는 상황에서도 한성부에서는 여전히 戶稅가 부세의 중심이 되었다.[57] 숙종 3년

56) 김준형, 1982 〈朝鮮後期 面里制의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쪽.

57) 조선에서는 대동법을 제정하여 貢案에 등재된 중앙관사의 貢物과 民役을 作米하

(1677)에 東部 崇信坊과 仁昌坊의 坊民이 “坊 안의 ‘땅[地]’은 징세하는 법이 없었는데 올해 楊州에서 타량할 때에 따로 명호를 세우고 東大門里라고 하였다”고 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방이 편제되면 원칙적으로 한성부에서는 地稅를 거두지 않았다.[58] 직접 부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物納하기도 했으나, 호를 기준으로 징수된다는 점은 동일했다. 즉, 한성부에서는 땅이 아닌, 戶稅를 부담하는 민호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성부에서는 호세의 종류에 따라 민호를 분담하여 관리하고자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조 17년(1793)에는 장용영을 설치하였는데 營屬과 平民이 같은 坊에 소속되어 장용영과 관련한 역을 分掌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영속은 별도로 계를 만들어 장용영에 소속시키고 모든 사역과 검칙을 營에서 관리하게 했다. 반대로 평민은 다른 계에 소속시켜 방역을 부담하게 하였다.[59] 坊民을 계로 편제하여 장용영의 영속과 별도로 관리한 것이다.

한성부, 특히 도성 안에는 수세가 이루어지는 기관이 밀도 높게 존재해 호세의 종류가 다양했기 때문에 징세 대상인 호구가 다양한 범위로 편제되었다. 도성 안에는 각종 관서와 시전, 군영이 집중되어 있었고 각 기관의 부세도 각기 달랐다. 예를 들어, 육조거리 인근에 있던 中部 澄淸坊에는 漢城府內契·典艦司契·吏曹內契·戶曹內契·備邊司契 등 각종 아문의 역을 담당하는 계가 존재했다. 각 관서에서는 해당 계에 속한 민호가 다른 역에 배정되지 않게 했다.[60] 예를 들어, 西部 仁達坊 奉常寺內契는 봉상시 관사의 담장을 수축하는 역을 맡았다.[61] 즉, 역을 수취하

였다. 즉, 현물과 노역으로 이루어진 세를 전결미로 대신 수취하고자 했다. 비록 지방 군현의 잡역세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대동법의 주요한 취지는 전결미의 징수였다. (김덕진, 1999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국학자료원, 20~21쪽.) 그러나 한성부 오부의 부세는 애초에 전세와는 관련이 없고, 모두 호세로 징수되었다. 대동법이 성립하더라도 한성부의 부세 체제가 바뀔 일은 없던 것이다.

58) 《度支志》 外篇 권2, 版籍司 版圖部 坊役.

59) 《승정원일기》 1717책, 정조 17년 5월 25일 병진; 《壯勇營故事》 6책, 병진년 12월 22일.

60) 예를 들어, 영조 20년(1744) 奉常寺는 西部에서 奉常寺內契의 민호를 다른 역에 차출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다른 역에 배정하지 않게 할 것을 청하였다. (《승정원일기》 980책, 영조 20년 11월 21일 갑오.)

는 기관이 밀도 높게 분포했고 분배 대상이 되는 호구도 각기 달랐기 때문에 시전, 관청 등 다양한 단위로 만들어진 계가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부세와 관련해 다양한 단위의 계가 조직되는 것은 조선후기 지방 군현에서도 나타나는 계의 특징에서 비롯되었다. 雜稅를 부과하고 수취하기 위해 民庫를 조직하고 재원을 운영하였는데, 면 단위의 계이면 面契, 동 단위의 계이면 洞契 혹은 분배 대상이 되는 호에 따라 성격과 명칭이 달라졌다.[62] 응세, 응역 조직이 기금을 조성해 특정 부문의 세역을 납부하는 형태로 契房이 확산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63] 이러한 계 혹은 계방은 납세 사안에 따라 성격이 다르고 분배 대상이 되는 호구도 상이하였다. 한성부에서 편제한 계도 부세 수취에 따라 민호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계 조직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성부의 계는 호구를 편제하는 공식 행정단위였다. 따라서 부세와 같은 행정적인 기능과 더불어 군사적인 기능, 마을의 자치 조직으로서의 기능도 하였다. 예를 들어, 도성의 호구성책은 병조와 삼군영에도 보고되었는데, 이는 오부방민을 守城을 위한 병력 동원책으로 활용하고자 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64] 이 때 병력이 동원되는 단위는 호구를 파악하는 단위와 동일하게 계였다.[65] 이와는 달리 민고나 계방 등의 조직은 면이나 리와 같은 행정단위와 반드시 합치되지는 않았다. 민고나 계방 등이 《戶口摠數》와 같은 군현의 호구 관련 기록에 나오는 단위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한성부의 계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한성부에서는

---

61) 《승정원일기》 980책, 영조 20년 11월 21일 갑오.

62) 김건태, 2023 〈민고 계 그리고 왕토사상〉, 《대동문화연구》 121, 173쪽.

63) 송양섭, 2011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계방의 출현 -제역 및 제역촌과 관련하여-〉, 《역사와 담론》 59, 호서사학회, 34~35쪽.

64) 지방에서는 군현은 호조로, 軍營과 驛道는 병조로 파악한 호구를 보고하여 이원적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유진, 2021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의 변화 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쪽.) 한성부에서 호구를 파악한 호구가 병조에도 보고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명령 및 보고 체계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방과 다르다.

65) 영조 27년(1751)에 반포된 《御製守城綸音》에서는 오부방민을 동원하는 단위로 계가 기재되어 있다. (《御製守城綸音》, 都城三軍門分界總錄; 이근호 외, 1998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38~140쪽.)

계 조직을 행정단위로 채택해 사용했다는 점이 지방 군현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성부에서 계를 기초 행정단위로 사용한 일차적인 목적은 부세였지만, 반드시 단일한 호세를 기준으로 계가 구성되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 이는 같은 호세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호적에는 같은 계로 편제된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숙종 34년(1708) 箭串中村의 민호를 편제한 箭串中村契에서는 司僕寺 소속의 牽夫와 한성부의 방역을 지는 민호가 모두 전관중촌계로 호적에 기재되었다.[66] 같은 마을에 속한 민호를 계로 편제하면서 마을 안에서 각기 다른 호세를 부담하더라도 같은 계에 속하게 된 것이다. 당초 동일한 호세를 기준으로 민호를 편제했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혼재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특정한 부세에 따라 민호를 계로 나누기도 했지만, 주민의 생활권역인 마을[洞・村]이나 기존에 존재하던 기초 행정단위인 里를 단위로 민호를 계로 편제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마을이나 리를 단위로 민호와 부세를 관리했을 것이다. 이러한 편제에는 민호의 수, 부세량과 부세의 종류와 같은 각종 행정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성부에는 특정 부세가 계를 편제하는 단위가 되기도 했지만, 마을이나 리를 중심으로 계를 편제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성부에서는 다양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여러 단위로 계를 증설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했을 것이다.

17세기에 도성 안에서는 다양한 단위의 계를 기초 행정단위로 활용해 방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민호를 파악하는 정도가 강화되었다. 민호를 파악하는 단위를 세분하여 계를 편제함으로써 한성부의 민호 관리가 이전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계와 마을[洞・村] 개수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1895년 자료에 따르면 도성 내 中部 壽進坊에 마을은 壽洞・磵洞・槐井洞・松峴의 4개가 있었던 데에 비해,[67] 《호구총

66) 《승정원일기》 441책, 숙종 34년 윤3월 5일 임오.

67) 《京城府史》에서는 1895년의 署-坊-契-洞의 편제 상황을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2013 《서울사료총서 12 국역 경성부사_제2권》, 405~414쪽.) 여기에서 '洞'이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동'으로 기재된 마을을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수》에서 계는 上魚物廛契・相思洞契・靑城君契・司僕前契・司僕川邊契・上米廛契・濟用下契・壽進宮內契・壽進宮內行廊契・蓋井契・鐘縣屛門契・松峴契・磵洞契의 총 13개가 편제되어 있었다.[68] 마을을 호구 편제 단위로 하는 것보다 계로 편제할 때 밀도가 높았던 것이다. 이는 곧 한성부에서 민호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단위가 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전기에 일정한 호구 수에 따라 리를 편제한 것보다도 작은 규모로 편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작은 규모로 민호를 파악하는 것은 곧 민호 관리가 조밀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성저십리에서도 점차 다양한 단위의 계가 증설되고 방계 체계가 정비되면서 민호 관리가 강화되었다. 17세기에 방계 체계가 정비된 서부는 도성 안과 마찬가지로 계의 개수도 많고 편제되는 단위도 다양하였다. 마을이나 里名뿐만 아니라 시전명이나 관청명으로 이루어진 계가 많았던 데에서 알 수 있다.[69] 예를 들어, 西部 龍山坊에 소속되었던 御營廳倉契는 경강변에 있던 어영청 창고에 쌀을 운반하는 일[運米]을 하여 계를 만든 경우였다.[70] 이와 같이 서부에서는 성저십리의 다른 부보다 먼저 다양한 단위의 계가 편제되어 호구 편제가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17세기 후반~18세기에는 서부에 이어 성저십리의 다른 부에서도 점차 다양한 단위의 계가 증설되었다. 성저십리의 민호가 증가하고 부세가 변동하는 등 여러 이유로 민호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경강변의 민호를 관리하는 방에서는 계가 일・이계 혹은 상・중・하계로 분리되었다. 북부에는 북한산성이 설치되면서 산성의 관리와 관련된 계가 편제되었고, 창고나 관청 시설과 관련한 계가 편제되는 수가 늘어나기도 했다. 동부에서도 계가 증설되었다. 이처럼 성저십리에서도 다양한 단위의 계가 점차 증설되면서 민호를 관리하는 단위가 세분되었다.

다만, 서부를 제외한 성저십리의 다른 부는 도성 안보다 민호 수가 적

68) 《戶口摠數》 1책, 漢城府.
69) 《호구총수》를 기준으로 볼 때, 서부에 마을명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이루어진 계는 15개, 남부가 6개, 북부가 9개로 도성 밖에서는 서부가 가장 많다. (《戶口摠數》 1책, 漢城府.)
70) 《승정원일기》 1170책, 영조 35년 윤6월 30일 무신.

고 호세의 종류도 적어 상대적으로 계가 세분되지 않았다. 성저십리에 편제된 계의 개수 자체가 적었던 데에서 알 수 있다. 《호구총수》를 기준으로 도성 안에는 228개의 계가 존재했으나, 성저십리에는 126개로 도성 안에는 성저십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계가 편제되어 있었다.[71] 성저십리는 계의 개수도 마을[洞・村]이나 리의 개수보다 적었다. 1895년의 자료에는 東部 崇信坊에는 紅樹洞・伏車橋・藍橋・大井洞・片橋・場平里・米廛洞・場巨里・潁眉洞・亭子洞・新里・大鐘岩・新設洞・園里・宮里・上里・中里・雨傘閣里・小鐘岩・敦岩里・三仙坪・城北洞・小貞陵洞・孫哥亭・淸水洞・彌阿里・樊里・大水踰里・加五里・牛耳里의 총 30개의 마을과 리가 기재되었다.[72] 그러나 《호구총수》에 계는 崇信洞契・新設契・鐘巖里契・伐里契・加五里契・水踰村契・安巖洞契・陵洞契・沙阿里契・牛耳契의 10개만 편제되어 있었다.[73] 즉, 모든 마을이나 리를 단위로 계를 편제하지는 않았고 편제된 계의 개수도 적었다.

이처럼 성저십리에서는 도성 안에 비해 계가 세분되지 않은 이유는 민호가 적고 부세 필요성이 적어 계를 편제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도성 안에서는 각종 관사, 군영 등 기관이 밀도 높게 존재해 부세에 따라 계를 편제했던 것과는 달리, 성저십리는 관영 시설이 많지 않아 부역이 적고 호세의 종류도 적어 다양한 단위의 계를 많이 편제할 필요성이 적었다. 이는 성저십리에 편제된 계의 명칭이 대부분 기존부터 존재하던 里나 洞・村, 혹은 지형지물로 이루어진 데에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東部 崇信坊 安巖洞契, 仁昌坊 踏十里契는 기존의 마을이나 리 명칭을 그대로 계로 사용하였다. 즉, 기존부터 있던 마을이나 리 단위로 민호와 부세를 관리하기 위해 계를 편제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성저십리에 편제된 계의 대부분이 마을을 단위로 이루어졌고 그 수가 도성 안에 비해 적었다는 점에서 17~18세기에 이루어진 변화의 의의가 적다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성저십리에 편제된 계의 대부분이 단순히 행정단위명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면, 이전과 행정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71) 《戶口摠數》 1책, 漢城府.
72)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05~414쪽.
73) 《戶口摠數》 1책, 漢城府.

없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성부에서는 방과 계를 증설할 뿐만 아니라 군영을 통해 성저십리의 禁松, 禁葬을 순찰하는 데에 민호를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었다.[74] 계로 편제된 민호가 도성 수비에도 동원되어 민호에 대한 관리가 이전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75]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성저십리의 민호 관리는 점차 철저해졌다. 도성을 중심으로 한성부의 행정 관리는 점차 강화되고 있었고 성저십리에서 기초 행정단위 수가 증가하고 방계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에 있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도성 안에서부터 이루어진 방계 체계의 정비는 한성부에 호세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도성 안에서는 계가 세분되어 민호에 대한 행정 관리가 철저해졌다. 이와는 달리 성저십리는 계의 개수가 적고 기존부터 있던 마을과 리를 단위로 계를 편제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성저십리의 방과 계의 편제도 민호가 증가하거나 부세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행정적인 필요성이 생긴 결과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도성과 성저십리 전체의 방계 체계가 정비되면서 민호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74) 한성부에서 관할하는 금송의 범위는 현종대부터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유승희, 2013 〈조선후기 한성부의 四山 관리와 松禁 정책〉, 《이화사학연구》 46, 233쪽.)

75) 《어제수성윤음》에서는 도성과 성저십리의 주민을 계를 기준으로 나누어 도성을 순문하게 하고 있다. (《御製守城綸音》, 都城三軍門分界總錄.)

Ⅱ. 동부 및 북부 坊契 체계 일원화의 배경

1. 호구의 증가와 契 편제의 특징

18세기에는 성저십리에 방계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성저십리의 민호에 대한 한성부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었다. 이는 성저십리의 호구 수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즉, 한성부가 파악하는 민호가 증가하고, 행정단위인 방과 계가 증설되고 체계화되면서 관리가 철저해졌을 것이다. 다만, 部별로 계가 편제되는 배경은 각기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듯 계를 편제하는 목적에는 민호의 증가뿐만 아니라 부세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18세기 성저십리의 부별 호구 수와 계의 편제를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표 6] 《東國摠錄》과 《戶口摠數》의 部별 호구 수

(단위: 호/구)

部	구분	《東國摠錄》		《戶口摠數》	
中部	戶	3,858	(10.8)	4,082	(9.3)
	口	28,686	(13.8)	20,186	(10.7)
	男口	12,835	(13.6)	9,629	(10.0)
東部	戶	5,615	(15.7)	7,702	(17.5)
	口	26,290	(12.7)	29,710	(15.7)
	男口	12,572	(13.4)	16,331	(17.0)
西部	戶	12,800	(35.8)	16,371	(37.3)
	口	73,237	(35.3)	68,194	(36.1)
	男口	32,546	(34.6)	33,475	(34.8)
南部	戶	8,813	(24.6)	9,970	(22.7)
	口	54,577	(26.3)	46,784	(24.7)
	男口	24,698	(26.3)	23,587	(24.5)
北部	戶	4,682	(13.1)	5,804	(13.2)
	口	24,941	(12.0)	24,279	(12.8)
	男口	11,423	(12.1)	13,147	(13.7)
합계	戶	35,768	(100)	43,929	(100)
	口	207,731	(100)	189,153	(100)
	男口	94,074	(100)	96,169	(100)

※ 괄호 안 숫자는 '합계'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이다.

위의 [표 6]은 영조대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東國摠錄》과 정조 13년(1789)에 편찬된 《戶口摠數》의 각 部별 戶, 口, 男口 수와 오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76] 즉, 18세기 초중반에서 후반 사이의 호구 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호구 수 변동은 그 이전부터 이루어지던 변화의 연장선에 있었을 것이다.[77]

합계에서 알 수 있듯, 한성부 전체의 호 수는 증가한 데에 비해 구 수는 감소하였다. 다만, 구 수는 감소한 반면, 남구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부별로 살펴보면, 호 수는 모든 부에서 증가하였고 구 수는 동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에서 감소하였다. 다만, 남구 수는 중부와 남부에서는 감소한 반면, 동부와 서부·북부는 증가하였다. 각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호구 수의 변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각 부의 호, 구, 남구가 오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중부와 남부는 비율이 감소하는 데에 비해 동부와 서부·북부는 증가하였다. 대체로 동부와 서부·북부에서는 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이는 각 수치의 증가율에서 더 명확하게 보인다.

[표 7] 《東國摠錄》과 《戶口摠數》 사이 部별 호구 증감율

(단위: 호/구) (단위: %) (단위: %)

部	구분	호구 증감 수	호구 수 증감율	비율 증감율
中部	戶	224	5.8	-13.9
	口	-8,500	-30.0	-22.5
	男口	-3,206	-25.0	-26.5
東部	戶	2,087	37.2	11.5
	口	3,420	13.0	23.6
	男口	3,759	30.0	26.9
西部	戶	3,571	27.9	4.2

76) 《동국총록》은 기록된 정보의 시기상 영조 11년(1735)에서 영조 14년(1738)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동국총록(東國摠錄)》 상세정보, https://jsg.aks.ac.kr/dir/view?catePath=&dataId=JSG_K2-2077, 접속일자: 2023년 5월 16일.)

77) 도성 밖 경강변이나 산지에 거주하는 민호를 일컫는 "沿江山底民"의 호 수는 현종 11년(1670) 5,000여 호에서 영조 19년(1743) 8,463호로 증가하였다. (고동환, 2005 〈조선후기 경강지역 행정편제의 변동과 인구추세〉, 《서울학연구》 24, 20쪽.)

	口	-5,043	-6.9	2.3
	男口	929	2.9	0.6
南部	戶	1,157	13.1	-7.7
	口	-7,793	-14.3	-6.1
	男口	-1,111	-4.5	-6.8
北部	戶	1,122	24.0	0.8
	口	-662	-2.7	6.7
	男口	1,724	15.1	13.2

※ 증감 수는 <《호구총수》 수치-《동국총록》 수치>이다.

※ 증감율은 <(《호구총수》 수치-《동국총록》 수치)/《동국총록》 수치×100>이다.

호구 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정도는 부별로 차이가 확연하다. 위의 [표 7]에서 보이듯 호구 수로 증감율을 계산하면 동부는 호 수의 증가율이 37.2%이고 서부는 27.9%, 북부는 24.0%이다. 호 수의 증감율은 동부가 가장 높고 다음이 서부이며 북부가 가장 낮은 것이다. 구 수의 증감율은 동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는 모두 감소세에 있었다. 증감율이 큰 순서로 본다면, 동부, 북부, 서부, 남부, 중부의 순서로 나타난다. 호 수와 마찬가지로 동부, 서부, 북부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남구 수의 증감율은 동부, 북부, 서부의 순서로 증가세에 있었다. 비록 구 수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남구는 동부, 서부, 북부에서 증가하고 있던 것이다.

비율이 증가하는 정도는 호에서는 동부가 11.5%로 가장 높고 서부, 북부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구와 남구에서는 동부, 북부, 서부의 순서이다. 호구 수와 비율 모두 동부, 서부, 북부가 증가하는 정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동부와 서부, 북부가 호구 수가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오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던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도성의 서문 밖에서부터 경강변까지의 민호를 관리하는 서부의 호구 수에 중점을 두어 한성부 성저십리의 방계 체계 변동을 설명했다.[78] 그러나 18세기에는 동부와 북부의 호구 수와 오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증가하였다. 동부의 호구 수가 증가하는 정도는 오부에서 가장 높았고, 북부의 호구 증감율도 서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78) 고동환, 2015 앞의 논문, 170쪽.

전에는 서부를 중심으로 호구가 편제되었으나, 점차 동부와 북부에 호구의 수와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성저십리의 방계 체계 정비는 18세기에 이르러 호구가 증가하고 있던 동부와 북부의 변화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만, 동부와 북부의 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고는 하나, 다른 부에 비하면 호구 수 자체는 여전히 적었다. 기존 연구에서 동부와 북부에 중점을 두지 않은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서부에 비해 호구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방과 계가 편제될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본 것이다. 도성의 동북쪽과 서북쪽에 민호가 증가할 동인도 경강변만큼 충분치 않은 것이 이러한 결론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79] 그러나 동부와 북부는 호구 수에 비해 계의 수가 많았고, 경강변의 민호를 관리한 남부보다도 계가 많이 편제되었다.

[표 8] 《戶口摠數》의 部별 契 개수와 호구 수

(단위: 개/호/구)

部	구분	契 개수		戶 수		口 수	
中部	성내	91	(26.9)	4,082	(9.3)	20,186	(10.7)
東部	성내	19	(5.6)	3,950	(9.0)	18,141	(9.6)
	성외	22	(6.5)	3,752	(8.5)	11,569	(6.1)
西部	성내	39	(11.5)	3,830	(8.7)	20,187	(10.7)
	성외	52	(15.4)	12,541	(28.5)	48,007	(25.4)
南部	성내	53	(15.7)	6,898	(15.7)	37,566	(19.9)
	성외	18	(5.3)	3,072	(7.0)	9,218	(4.9)
北部	성내	14	(4.1)	3,334	(7.6)	16,291	(8.6)
	성외	30	(8.9)	2,470	(5.6)	7,988	(4.2)
합계	성내	216	(63.9)	22,094	(50.3)	112,371	(59.4)
	성외	122	(36.1)	21,835	(49.7)	76,782	(40.6)
	전체	338	(100)	43,929	(100)	189,153	(100)

※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이다.

위의 [표 8]에서 알 수 있듯, 계의 개수는 반드시 호구의 수에 비례하

79) 예를 들면, 流民의 문제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한성부에 증가한 유민은 도성 서문 밖이나 경강변과 같이 기존부터 개발된 지역에 정착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고동환, 2015 앞의 논문, 182쪽; 김미성, 2020 〈조선 현종~숙종 연간 기후재난의 여파와 유민(流民) 대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118, 124~125쪽.)

지는 않았다. 도성 안의 중부는 호구 수가 서부보다 적으나 계의 개수는 91개로 가장 많았다. 도성 밖에서는 호구 수가 가장 많은 서부가 계의 수도 가장 많으나 남부와 북부를 비교하면 알 수 있듯, 호구가 많다고 반드시 계도 많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었다. 도성 밖 북부의 호 수는 2,470호로 한성부 전체에서 가장 적으나, 계의 개수는 30개로 남부보다 많은 데에서 알 수 있다. 구의 수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도성 밖 남부의 구 수가 9,218구인데 비해 북부의 구 수는 7,988구임에도 불구하고 계는 북부에 더 많이 편제되었다.

이는 방별로 계산한 계 당 호구 수, 즉 계의 평균적인 규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동부와 북부의 계 당 호의 수는 다른 부에 비해 적었다. 경강변의 민호가 편제 대상이 되었던 서부 龍山坊, 西江坊은 호 수가 각각 4,617호, 2,618호이고 계의 수는 20개, 10개로 계당 평균 호 수는 230.9호, 216.9호였다.[80] 남부의 豆毛坊과 屯之坊은 각각 호 수가 1,425호, 1,241호이고 계의 수는 7개와 8개로 계당 평균 호 수는 203.6호, 155.1호였다. 이와는 달리, 崇信洞契・牛耳里契 등이 속한 동부 崇信坊은 호 수는 1,241호, 계의 수는 11개로 계당 평균 호 수는 112.8호였다. 訓倉契・御倉契・禁倉契 등이 속한 북부 常平坊과 佛光里契・葛古介契 등이 속했던 북부 延恩坊는 각각 호 수는 560호, 631호이고 계의 수는 6개, 8개이며 계당 평균 호 수는 93.3호, 78.9호였다. 동부와 북부의 계의 평균적인 호구 규모가 서부와 남부보다 작았음을 알 수 있다.

동부와 북부의 호구 수가 적고, 계의 평균적인 호구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일차적인 원인은 마을의 민호 자체가 적은 것에 있었다. 경강변과 도성 서문 밖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관리할 민호 자체가 적었다.[81] 이러한 민호 규모는 1910년대 이후 京城 인근에서 도시 개발이

---

80) 방의 호 수와 계의 수는 《호구총수》를 참고하였다. 이하 남부, 동부, 북부 모두 같다. (《戶口摠數》 1책, 漢城府.)

81) 예를 들어, 1915년 안암동의 인구는 345명이었다. 안암은 東小門과 興仁之門 바로 밖, 도성 인근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는 인구가 적었다. 동부와 북부의 다른 지역은 이와 비슷하거나 인구가 더 적었을 것이다. (강제훈 외, 2018 《서울 洞의 역사 성북구 제3권 보문동・안암동・종암동》, 서울역사편찬원, 145쪽.)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지되었다. 예를 들어, 하천이 자주 범람하던 중랑천은 1915년 장안평에 제방을 쌓고, 1928년에 한강 본류에서부터 뚝도, 장안평 동쪽을 정비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지형을 갖추게 되었다.[82] 이러한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민호가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18세기에는 생활 여건의 한계 등의 문제로 동부와 북부에서는 실제 거주민이 증가하기 어려웠다.

민호도 적고 계의 규모도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와 북부에서 방과 계가 편제되었다는 점은 갑오개혁 이후 1895년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9] 《戶口摠數》와 1895년의 部별 契 개수와 감소율

部	구분	契 개수				감소율(%)
		《戶口摠數》		1895년		
中部	성내	91	(27.0)	29	(16.4)	68.1
東部	성내	20	(5.9)	8	(4.5)	60
	성외	21	(6.2)	1	(0.6)	95.2
西部	성내	39	(11.5)	20	(11.3)	48.7
	성외	52	(15.4)	47	(26.6)	9.6
南部	성내	53	(15.7)	28	(15.8)	47.2
	성외	18	(5.3)	13	(7.3)	27.8
北部	성내	14	(4.1)	8	(4.5)	42.9
	성외	30	(8.9)	23	(13.0)	23.3
합계	성내	217	(64.2)	93	(52.5)	51.1
	성외	121	(35.8)	84	(47.5)	30.6
	전체	338	(100)	177	(100)	47.6

※ '部'의 행정단위는《戶口摠數》는 部, 1895년은 署이다.

※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이다.

※ 감소율은 〈(《호구총수》 수치-1895년 수치)/《호구총수》 수치×100〉이다.

위의 [표 9]는 정조 13년(1789) 《호구총수》와 1895년의 계 개수를 도성 내외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83] 전체적으로 계의 개수가 감소하는

82) 홍금수, 2006 〈箭串場의 景觀變化〉, 《문화역사지리》 18(1), 121~125쪽; 조선총독부, 한국건설기술원 역, 2011 《근대 수문조사 고문서 번역 시리즈 9 치수 및 수리 답사서(1920년)》, 국토해양부.

83) 《戶口摠數》 1책, 漢城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05~414쪽.

상황에서 특히 도성 밖 동부의 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성 안에서는 절반 이상의 계가 폐지됐다. 도성 밖 동부와 도성 안 모든 부에서 계가 많이 폐지된 것은 계를 편제하는 기준이 갑오개혁 이후에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18세기에는 국가의 정책이나 부세 조건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었던 것에 비해 갑오개혁 이후에는 점차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감소했다.[84]

갑오개혁 이후에 계를 편제하는 기준이 달라졌음은 구체적으로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도성 내에서는 각종 시전명・인명・관청명으로 이루어진 계가 없어졌고, 도성 밖 동부에서는 왕십리계를 제외한 마을과 里 명칭으로 이루어진 계가 모두 폐지되었다. 도성 밖 북부에서도 휴암리계, 구리계, 망원정이계와 같은 마을이나 리 명칭으로 이루어진 계가 없어졌다. 즉, 갑오개혁 이후 계를 편제하는 기준이 변화한 것이 계를 폐지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도성 밖에서는 실제 거주민이 적고 부세의 필요성이 적은 계가 없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18세기 이전에는 실제 거주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호구가 파악되고 계가 편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세기 동부와 북부에서는 민호 수 외에 호구를 관리하고 계를 편제할 다른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인구와 같은 자연적인 동인 이외에 별도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파악되는 호구 수도 증가하고 계도 증설되면서 18세기 후반에 방이 편제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다른 부보다 호구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가 많이 편제되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18세기에 한성부 오부의 호구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동부, 서부, 북부의 호 수와 오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는데, 동부와 북부에서 이전에 비해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한성부의 동부와 북부에서는 민호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후반~18세기 초중반에는 성저십리, 특히 동부와

84) 서현주는 1894년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공간과 사람을 일치시켜 지역 내 주민을 편제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보았다. (서현주, 2002 〈朝鮮末 日帝下 서울의 下部行政制度 연구: 町洞制와 總代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0~71쪽.)

북부를 중심으로 계가 편제되고 그 이후로도 호구가 증가하며 18세기 후반에는 방계 체계가 성립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연적인 동인 이외의 요인, 즉 18세기에 동부와 북부의 호구를 파악하고 편제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2. 왕실 능묘의 조성과 주변 민호의 관리 강화

18세기 동부와 북부에서 민호에 대한 행정 관리가 강화된 요인으로 국가적 필요성이 증대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성부의 외부에서 민호가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호구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거주 여건이 열악한 동부와 북부에 민호가 안집할 가능성은 적었다. 이보다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모민책이 이루어지거나 부세를 위해 민호 관리가 강화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이후 성저십리에는 왕실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시설물이 정비되었다. 예를 들면, 각종 중앙 재정아문들이 정비되면서 도성 안팎에 창고 시설이나 왕실의 의례 공간이 설치되었다.[85]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관영 시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호의 관리도 중시되었다.

18세기에 동부와 북부의 민호 관리가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는 오랫동안 도성 인근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왕실의 능묘가 조성된 것이다.[86] 왕실의 능묘가 조성되면서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役을 지는 민호가 생기고 이러한 민호를 분담하여 관할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민호의 역을 분담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한성부의 민호 파악이 철저

85) 최주희, 2012 〈조선후기 왕실·정부기구의 재편과 서울의 공간구조〉, 《서울학연구》 49, 131~132쪽.

86) 18세기 이후 현재의 성북구 지역에 의릉을 비롯한 왕자, 공주 묘가 조성되었음을 밝힌 이근호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성부의 동북부 지역에 교통로가 발달하고 한성부의 행정 체계가 변동한 것이 능묘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근호, 2020 〈조선후기 성북 지역 陵·園·墓 조성과 그 의미〉, 《북악사론》 12, 164~166쪽.) 그러나 능묘의 조성과 행정 체계 정비의 상관관계는 해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 지역이 동부에 한정되어 한성부 전체는 조망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해졌다.

조선 건국 초부터 도성 인근 10리 이내에는 묘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었다.[87] 이러한 원칙은 사대부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실 구성원에게도 암묵적으로 적용되었다.[88] 이는 숙종 13년(1687)에 明安公主의 묘를 성저십리에 만드는 것에 대해 사헌부가 도성의 지척에 묘지를 만들 수 없다는 《경국대전》의 조항을 들며 반대한 데에서 알 수 있다.[89] 성저십리에는 왕실도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의식이 작용한 결과였다.[90]

그러나 영조대부터 懿陵을 시작으로 성저십리에 왕실의 능묘가 만들어졌다. 의릉이 조성되면서 능묘를 관리하기 위해 入番한 수릉군의 거주지를 정하고 한성부의 방역을 면제하자, 한성부는 방역을 부담하는 민호를 관할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明陵의 경우, 성저십리에 왕릉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陵域이 성저십리의 민호가 사는 마을을 포괄해 한성부의 민호가 陵役에 동원되었다. 한성부는 의릉과 마찬가지로 명릉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록 명릉이 의릉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지만, 의릉의 陵域 문제가 불거지자 이미 조성된 다른 능묘에서도 같은 문제가 논의된 것이다. 이렇게 성저십리에 능묘가 설치되면서 특히 동부와 북부에서 민호의 관할 문제가 제기되고 한성부가 민호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

87) 《經國大典》에는 "도성에서 十里 이내 및 人家의 百步 내는 매장할 수 없다[京城底十里及人家百步內, 勿葬]." 라고 명시하였다. (《經國大典》 禮典 喪葬.)

88) 문화재청에서는 조선시대 왕릉의 입지를 분석하여 도성을 중심으로 반경 4km 밖, 40km 이내가 기준이 되었을 것이라 정리하였다. (이근호, 앞의 논문, 145쪽; 문화재청, 2007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추진 종합학술연구》.)

89) 《승정원일기》 325책, 숙종 13년 10월 2일 정미.

90) 원래 장단에 조성되었던 연산군의 私親인 폐비 윤씨의 묘가 연산군 3년(1497)에 천장산 인근으로 이장하면서 懷墓로 격상된 예가 있기는 하나, 이후 중종대에 일반 묘역으로 격하되었다. (《연산군일기》 권22, 연산 3년 4월 19일 경인; 《연산군일기》 권52, 연산 10년 3월 24일 을유.) 연산군과 같은 사례가 아닌 이상 성저십리에 왕실의 능묘를 조성하는 일은 드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천장산은 현재 동대문구 회기동 일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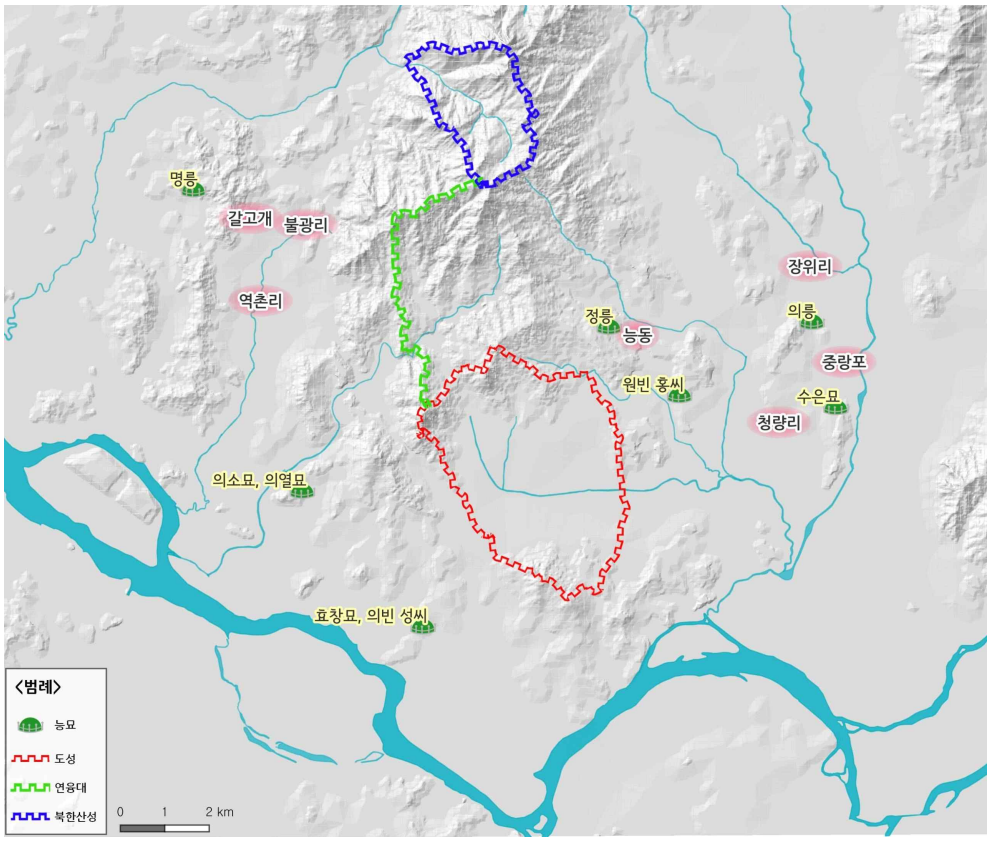

<그림 3> 18세기 성저십리의 능묘와 陵域 관련 마을

영조 즉위년(1724) 의릉의 설치는 한성부가 능묘와 관련해 성저십리의 민호를 관할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경종의 陵으로 조성된 의릉은 도성 가까이에 위치하여 禁葬이나 禁松 관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91] 왕릉을 관리하기 위한 수호군을 모집하였으나,[92] 의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흩어져 거처하기 때문에 능을 관리하기 어려웠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예조는 의릉 인근에 경계를 정하고 수호군이 거주하면서 왕릉을 관리하게 하였다.[93] 이처럼 능묘의 인근에 수

91) 《승정원일기》 622책, 영조 2년 8월 30일 기축
92) 의릉을 조성할 당시에 예조에서는 능군을 抄出하여 成冊하였으나 이 때에는 아직 거주지를 조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山陵都監儀軌》, 영조 즉위년 11월 초3일.)

호군이 모여서 살게 한 것은 의릉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릉의 火巢는 북쪽은 石串峴, 동쪽은 紅箭門 밖 300보 정도, 남쪽은 淸涼峴, 서쪽은 왕릉의 主山과 뒷산을 경계로 삼았다.[94] 이러한 범위로 화소가 지정됨으로써 위의 <그림 3>에서 보이듯 동북쪽의 장위리와 동남쪽의 중랑포, 남쪽의 청량리의 민호가 화소에 편입되었다.[95] 화소 주변의 민호가 陵役을 담당하게 되기도 했다. 이렇게 능묘의 영역이 설정되면서 한성부는 陵役에 편입되지 않고 기존과 같이 한성부의 연호잡역을 지는 민호를 관리하고자 했다. 陵役에 편입된 민호는 한성부의 방역을 면제받기 때문에 한성부에서는 능역에 포함되지 않는 민호를 파악하여 방역 부담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던 것이다.

의릉에서 수호군을 능묘 인근에 거주하도록 한 이후 도성 인근에 위치한 다른 능묘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경종 즉위년(1720)에 조성된 숙종의 陵인 明陵에서 수호군의 거주지가 만들어진 것은 영조 5년(1729)의 일이었다. 의릉의 예를 참고하여 명릉을 관리하기 위해 龜山里・葛古介・佛光里 등의 마을에 별도로 민호를 모집해[募入] 연호잡역을 감제하고 능역을 지게 한 것이다.[96] 이에 한성부는 성저십리 내 마을의 민호가 방역을 면제받고 陵役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두 마을의 민호가 명릉과 익릉 두 능에 투입되었다”고 하면서 “거주하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여러 능의 수호군인데 (그 외에도) 또한 약간의 민호가 있었다.”고 한 데에서 한성부가 능역을 지는 민호 외에 마을의 나머지 민호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97]

명릉의 사례는 한성부가 능묘와 관련해 민호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주장하고자 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98] 조정에서는 이 문제의 쟁점을 호역

---

93) 《승정원일기》 622책, 영조 2년 8월 30일 기축; 《승정원일기》 623책, 영조 2년 9월 5일 갑오.

94) 《山陵都監儀軌》, 영조 즉위년 10월 17일.

95) 《승정원일기》 601책, 영조 1년 9월 24일 무오.

96) 《승정원일기》 763책, 영조 9년 8월 6일 갑인.

97) 《승정원일기》 762책, 영조 9년 7월 25일 갑진; 《승정원일기》 763책, 영조 9년 8월 6일 갑인.

98) 명릉에 대한 예조와 한성부의 논의는 영조 5년(1729)부터 정조 22년(1798)까지 계속되었다. (《승정원일기》 692책, 영조 5년 8월 29일 신미; 《승정원일기》

을 부과할 수 있는 민호를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우의정 송인명이 화소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 "간사한 백성이 가화소를 빙자하여 역을 면하려는 계략"이라고 평가한 데에서 알 수 있다.[99] 마을을 한성부의 금표 내로 보면 수릉군을 제외한 마을의 민호에게 한성부의 烟戶雜役을 부과할 수 있었다. 반대로 陵域으로 보면 마을의 민호는 陵役을 지고 방역을 면제받아 한성부의 연호잡역을 지지 않았다. 한성부에서는 화소를 조금이라도 줄여 민호를 방역에 출역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예조와의 협의를 거쳐 화소를 지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 22년(1798)에 예조판서 沈煥之가 연서천 안쪽의 갈현동, 불광리, 沙契[100], 驛契[101]의 민호에게 한성부의 烟役을 면제하고 명릉과 익릉 두 능의 外局을 수호하는 역을 전적으로 지게 한 데에서 알 수 있다.[102] 연서천을 기준으로 한성부의 금송 관할지와 화소를 분리하고 이에 따라 역을 준 것이다. 다만, 이후에도 "경사와 군문의 下吏들이 서로 침범하는 폐단이 있다"고 언급한 데에서, 한성부가 화소 안의 민호를 한성부의 잡역에 출역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음을 알 수 있다.[103]

이와 같이 의릉을 시작으로 민호를 관할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성부의 민호 관리가 강화되었다. 陵域이 지정되면서 같은 마을의 민호라도 일부는 예조의 능역을 지게 되고 일부는 한성부의 방역을 부담하게 되어 역에 따라 민호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렇게 민호의 역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방역을 부과하기 위해 한성부의 민호 관리가 강화되

763책, 영조 9년 8월 6일 갑인; 《승정원일기》 702책, 영조 6년 3월 13일 신사; 《승정원일기》 762책, 영조 9년 7월 25일 갑진; 《승정원일기》 882책, 영조 14년 12월 25일 을묘; 《승정원일기》 1795책, 정조 22년 8월 12일 계묘.)

99) 《승정원일기》 882책, 영조 14년 12월 25일 을묘.

100) 私契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01) 驛契의 민호는 본래 延曙驛의 驛役을 담당했을 것이나, 정조 22년(1798)에는 한성부의 연호잡역을 면제받고 명릉의 능역에 동원되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역계에는 연서역의 역역을 담당하는 민호 외에 한성부의 연호잡역을 담당하는 민호가 있었다. 이 민호가 명릉이 조성되면서 잡역을 면제받고 능역을 지게 되었을 것이다. 둘째, 역역을 지는 민호가 기존부터 한성부의 연호잡역도 부담하고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계 안에서 부역이 분담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역계의 민호 중 일부가 명릉의 능역에 동원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102) 《승정원일기》 1795책, 정조 22년 8월 12일 계묘.

103) 《승정원일기》 1795책, 정조 22년 8월 12일 계묘.

었을 것이다. 한성부에서는 방역을 부담하는 민호의 수를 조금이라도 유지하고자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능묘가 설치되면서 한성부가 민호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렇게 민호의 관리를 강화한 것은 동부와 북부에 계를 편제하고 나아가 방계 체계도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성부에서는 능묘와 관련해 復戶되는 호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계를 증설하여 방역을 지는 민호를 관리하고자 했을 것이다. 혹은 이미 계가 편제되어 있다면 방역을 지는 민호를 계에 소속시켜 철저히 관리하고자 했을 것이다. 명릉의 陵域으로 편입된 불광리, 갈고개 등의 마을은 현종 4년(1663)에 편찬된 《북부장호적》에는 계로 기재되지 않았지만,[104] 이후 영조 27년(1751)의 《어제수성윤음》에는 계로 기록되었다.[105] 명릉의 설치가 마을의 민호를 계로 편제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의릉 인근의 민호와 관련된 장위리, 중랑포, 청량리 등의 마을에서도 의릉이 설치되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민호가 계로 편제된 것으로 보인다.[106]

왕릉보다는 규모가 작으나, 18세기에는 명릉과 의릉 외에도 성저십리에 왕실의 墓가 설치되었다. 영・정조대에 총 6곳의 묘가 만들어진 데에서 알 수 있다. 시간 순서대로 영조 28년(1752)에 조성된 의소세손의 묘인 懿昭墓와 영조 40년(1764)에 지어진 사도세자의 묘 垂恩墓, 같은 해 조성된 暎嬪 李氏의 묘인 義烈墓가 있었다. 정조대에는 정조 3년(1779)에 만들어진 元嬪 洪氏의 묘, 정조 10년(1786)에 조성된 문효세자의 묘인 孝昌墓와 宜嬪 成氏의 묘가 있었다. 순조대 이후에도 묘가 계속 만들어져 도성 인근에 묘를 조성하는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왕실의 묘가 만들어진 지역은 도성 인근의 산자락이었는데, 도성의 동북쪽과 서북쪽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의소묘는 鞍峴의 남쪽 기슭에서 巳向에 있는 언덕,[107] 혹은 옛 연희궁 남쪽 기슭으로 표현되는

---

104) 《北部帳戶籍》.

105) 《御製守城綸音》, 都城三軍門分界總錄.

106) 영조 2년(1726)에 東部 參奉 金大成은 동부에 38계가 속해있다고 하였다. 이는 《어제수성윤음》에 기재된 계의 숫자와 같다. 영조 2년(1726)까지는 계가 《어제수성윤음》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되었을 것이다. (《승정원일기》 619책, 영조 2년 6월 21일 임오; 《御製守城綸音》, 都城三軍門分界總錄.)

곳[108]에 위치하였다. 안현과 옛 연희궁은 도성의 서쪽, 현재의 북아현동에 위치한 지역이다. 연희궁 인근은 사대부와 일반 서민들이 묘를 짓는 지역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조선후기에 왕실의 묘가 다수 만들어진 곳이기도 했다. 의소묘뿐만 아니라 의열묘도 안현 인근에 만들어졌다.[109] 수은묘[110]는 배봉산 자락,[111] 즉 현재의 삼육보건대학교에 위치하였다. 이외에도 원빈 홍씨의 묘인 仁明園은 東部 溫水洞에 위치하였다.[112] 효창묘와 의빈 성씨 묘는 서로 인근에 있었는데 효창묘는 栗木洞,[113] 현재의 용산 효창공원에 위치하였고 의빈 성씨의 묘는 효창묘의 바로 동쪽에 조성되었다.[114]

비록 왕릉은 아니지만, 18세기에 만들어진 각종 왕실의 묘의 수호군도 묘의 인근에 거주하며 묘를 관리하게 하였다. 의소묘의 관리를 위해 入番한 수호군이 의소묘 인근에서 거주할 초가집을 호조에서 만들어 지급하게 한 조치에서 알 수 있다.[115] 동일한 조치가 효창묘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116] 다른 묘에서도 수호군의 거주지가 묘 인근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묘 인근에 陵域을 지정해 수호군을 거주하게 함으로써 한성부는 방역을 지는 민호와 구분하기 위해 민호를 계에 소속시켜 관리하고자 했을 것이다. 즉, 18세기 성저십리에 왕실의 능묘가 조성되면서 민호를 관할하는 문제가 중요해진 것이다.

---

107) 《禮葬都監儀軌》.
108) 《墓所都監儀軌》.
109) 의열묘가 조성된 곳은 당시 지명으로 楊州 延禧宮 大野洞으로, 의소묘 인근이다. (《璿源譜略修正儀軌》.)
110) 垂恩墓는 영조 40년(1764) 安葬했을 당시에는 '수은묘'라고 명칭하였으나, 정조 즉위 후 정조 즉위년(1776) 존호를 莊憲으로 올리면서 永祐園으로 명칭을 격상시켰다. 이후 정조 13년(1789) 수원 화산으로 이장한 뒤 顯隆園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융릉·건릉 이야기, https://royaltombs.cha.go.kr/tombs/selectTombInfoList.do?tombseq=162&mn=RT_01_13_01, 접속일자: 2023년 3월 6일.)
111) 《思悼世子墓所都監儀軌》.
112) 《璿源譜略修正儀軌》.
113)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
114) 〈宜嬪墓圖形〉.
115) 《승정원일기》 1085책, 영조 28년 8월 21일 기유.
116) 《승정원일기》 1085책, 영조 28년 8월 21일 기유.

18세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능묘가 조성되었고, 이는 명릉이나 의릉과 같이 역을 분담하고 민호를 관할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한성부에서 방역을 부담할 민호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동부와 북부에서 한성부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대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18세기 초중반에 계가 증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동부와 북부의 길을 통해 국왕의 행차가 자주 이루어지면서 도로 修治와 같은 지역 관리에 민호가 동원되는 등[117] 한성부의 관리가 철저해지는 배경은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즉, 18세기에 한성부가 성저십리의 민호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왕실과 각종 관청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요약하면, 18세기 동부와 북부에서는 한성부가 민호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부와 북부의 호구가 늘어나고 한성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을 것이다. 민호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동부와 북부에서는 능묘의 조성과 같은 국가의 필요성이 민호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관리의 강화는 계가 편제되고 방계 체계가 정비되는 동인이 되었다.

3. 군사 방어 시설의 설치와 坊契 체계의 정비

동부와 북부에서 다양한 국가적 필요성은 18세기 후반에 방계 체계가 정비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기폭제가 된 것은 군사 방어 시설인 북한산성과 연융대의 축조였다. 18세기 중후반에 북한산성과 연융대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계가 신설된 데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동부와 북부의 민호를 파악하고 동원한 목적 중 하나도 이러한 군사 방어 시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계를 편제하고 민호를 관리하면서 18세기 후반에는 동부와 북부에도 방계 체계가 정

117) 영조와 정조대에는 국왕의 외방 陵行 횟수가 증가하였다. 도성 서쪽으로 행행할 때에는 沙峴-弘濟院 길을 거치고, 동쪽으로 행행할 때에는 興仁門-關王廟-鼓巖-沙阿里-石串峴를 거쳐 행행이 이루어질 때마다 도로 수치가 이루어졌다. (김지영, 2008 〈조선후기 국왕 행차와 거둥길〉, 《서울학연구》 30, 43~50쪽.)

비되었다.

숙종대 이후 한성부에서 발생한 큰 변화 중 하나는 북한산성, 연융대 등 군사 방어 시설이 성저십리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 방어 시설의 설치는 17세기 후반에 수도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 아래 이루어졌다.[118] 특히 도성 인근에 입보할 수 있는 성을 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 북한산에 산성을 축조하였다. 숙종대 북한산성에 이어 영조대에 鍊戎臺[119]까지 축성되면서 도성과 연융대, 북한산성을 잇는 성곽의 축조가 완료되었다.[120] 이후 북한산성과 연융대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계를 편제하였으나, 시기상으로는 계의 편제가 북한산성의 축성보다 30~40년 정도 늦게 이루어졌다. 축성 이후에도 북한산성과 연융대에 대한 지원과 민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계가 편제된 것이다.

계를 편제하기 이전에 숙종대에 북한산성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軍營·창고 등의 건물들이 먼저 북한산성과 연융대에 설치되었다.[121] (<그림 4> 참고) 숙종 37년(1711) 북한산성이 완공된 이후 같은 해에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이 산성 내에 군영과 창고를 설치하였다.[122] 삼군문이 각기 구역을 분담하여 실제 산성을 관리하고 방어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다.[123] 이후 북한산성 내에 군량미를 저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숙종 40년(1714)에는 연융대에 經理廳 창고를 조성하고 선혜청 창

118) 이근호 외, 앞의 책, 24~26쪽.

119) 원래 蕩春臺였으나 영조 30년(1754)에 鍊戎臺로 명칭을 바꿨다. (《영조실록》 권82, 영조 30년 9월 2일 무인.) 본 논문에서는 영조대에 바뀐 이름인 연융대로 통일하여 지칭하였다.

120) 북한산성은 숙종 37년(1711) 4월 3일 축성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18일에 완공하였다. (《비변사등록》 61책, 숙종 37년 3월 27일; 63책, 숙종 37년 10월 18일; 김우진, 2022 《肅宗의 對淸認識과 首都圈 防禦政策》, 민속원, 232쪽.)

121) 숙종대에는 아직 명칭이 연융대로 바뀌지 않아 탕춘대였다.

122) 〈北漢山城禁衛營移建記碑〉에 따르면 숙종 37년(1711)에 "백제의 옛 성을 개축해 각각 군영을 두고 군량과 무기를 준비해 국가가 변란을 맞아 다급할 때에 장차 都民들과 천험한 요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다. (〈北漢山城禁衛營移建記碑〉.) 북한산성이 축조됨과 동시에 군영과 창고를 설치한 것이다.

123) 삼군문은 북한산성 내에 留營을 설치하고 留營監官 1인을 중심으로 10인 내외의 관리자를 두어 산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萬機要覽》 군정3, 摠戎廳 北漢山城; 김우진, 앞의 책, 236~237쪽 참고.)

고도 증설하였다.[124] 북한산성의 남쪽에 위치한 연융대에 창고를 설치하여 북한산성을 지원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산성의 지원과 관련한 설비는 어느 정도 완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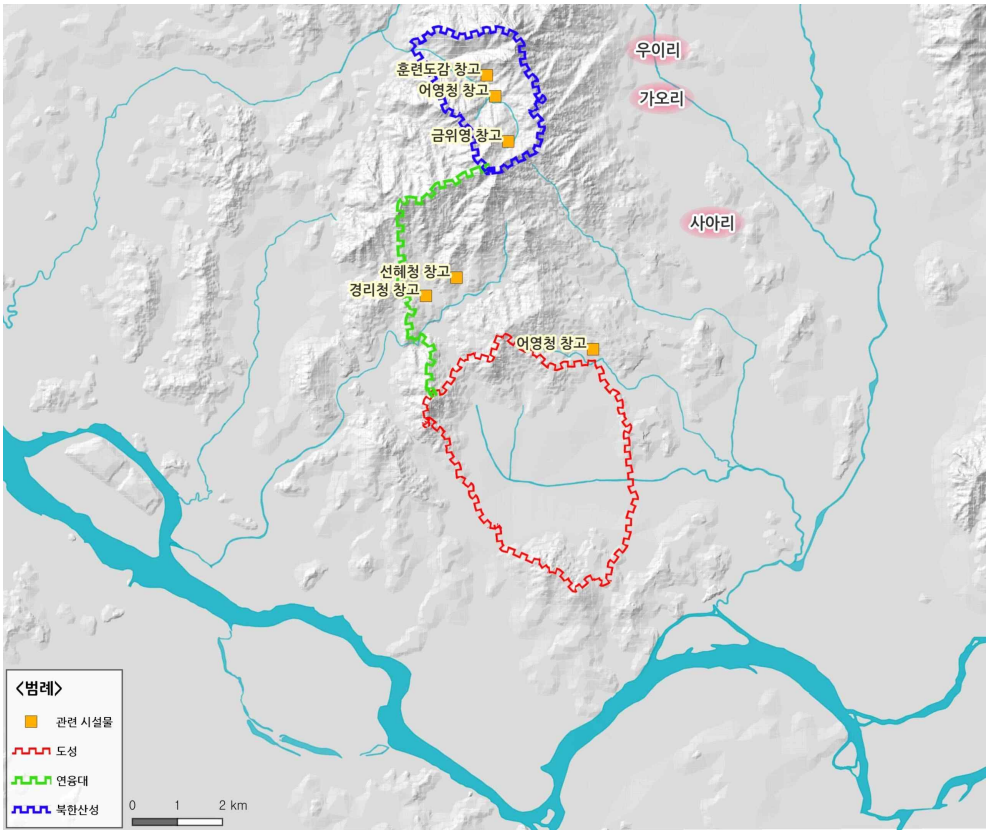

<그림 4> 18세기 북한산성·연융대와 관련한 성저십리의 마을과 시설물

이 외에도 산성을 보조하기 위해 산성의 인근 지역이 정비되었다. 도성에서 북한산성으로 국왕의 행차가 자주 이루어지자 도성의 동북부 혹은 서북부를 통해 북한산성으로 가는 길이 정비된 것이다.[125] 도성에서 북한산성에 가는 길은 서쪽과 동쪽의 두 방향이 있었는데, 서쪽은 弘濟院과 綠礬峴을 지나 津觀里 앞을 경유해 북한산성 서문으로 가는 길이었

124) 《승정원일기》 485책, 숙종 40년 9월 25일 계해.
125) 《승정원일기》 463책, 숙종 37년 10월 1일 병진.

다. 동쪽은 도성에서 흥인문으로 나가 정릉 앞 길을 경유하여 미아리와 우이리, 도성암[현재의 도선사]을 지나 북한산성의 동북문으로 가는 길이었다. 본래 동쪽 길은 험준한 산길이 많아 왕이 행차하는 길로는 잘 쓰이지 않았으나 북한산성이 축성되면서 국왕이 행차할 수 있는 길로 수리되었다.[126] 이러한 후속 조치로 기존부터 자주 행차길로 사용되던 도성의 서북쪽 길과 함께 원래 사용되지 않던 동북쪽의 길도 정비되었다. 이를 통해 우이리부터 가오리, 사아리에 이르는 동북부 지역이 북한산성 축성의 후속 조치로 정비되고 관리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을 것이다.

산성을 보조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산성 안과 그 인근의 민호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논점으로 제기되었다. 숙종 38년(1712)에는 북한산성 내의 민호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郡邑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127] 북한산성에 "현재 들어온 백성이 이미 100여 호"이기 때문에 민호의 행정적인 관리를 위해선 삼군문이 아닌, 군현을 만들어 민호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처음에는 양주와 고양의 面을 분리하여 하나의 군현으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호구와 田結, 吏屬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양주와 고양의 面을 분리하면, 해당 군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군현은 만들지 않는 대신 방역을 지우지 않는 조건으로 민호를 한성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직후에 계가 편제되지는 않았다. 이 당시에는 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부의 직할로 민호가 관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산성의 경영과 관련하여 도성의 동북부에서도 민호를 관리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었다. 우이리[128]부터 사아리에 이르는 도성의 동북부에 위치한 마을의 민호가 산성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경종 1년(1721)에는 북한산성 아래 5리 내의 진황처에 백성을 모집[募民]하여 기경하게 하고, 세곡과 약초를 수세하여 산성에

126) 《승정원일기》 463책, 숙종 37년 10월 1일 병진.
127) 《비변사등록》 64책, 숙종 38년 5월 8일.
128) 우이리는 현 강북구 우이동과 도봉구 쌍문동의 우이리까지 포함하여 포괄하는 범위가 넓었다. (정요근 외, 2022 《서울 洞의 역사 도봉구 제1권》, 서울역사편찬원, 39쪽.)

비축하게 하였다.[129] 이 때 '북한산성 아래 5리'는 대략 가오리에서 우이리, 사아리까지를 일컬은 것으로 보인다.[130] 이렇게 북한산성에 비축되는 군량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삼군문이 나누어 담당하고 그 중 미아리, 靑水洞[131], 가오리, 우이동의 소출은 금위영창에 배속되었다.[132] 북한산성의 군량 지원을 위해 성저십리, 특히 동부에 수세를 위해 민호가 모집되고 관리된 것이다.

이 때 전답이 위치한 곳이 성저십리의 마을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모민한 민호는 한성부에서 관리했을 것이다. 비슷한 예로, 우이리보다 북쪽에 위치한 楊州 海等村面에 甲士屯을 만들고 모민하였는데, 모민한 민호는 양주에서 관리했다.[133] 같은 방법으로 수확물은 삼군문에서 관리하나, 모민한 민호의 관리는 한성부가 담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둔전이 설치되면서 도성의 동북쪽 마을의 민호를 한성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숙종대에 북한산성이 축성되면서 도성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민호가 동원되는 경우가 증가했다. 17세기 후반~18세기 초중반에 동부와 북부에서 계를 편제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민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북한산성이 완공된 이 시기에는 아직 북한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는 연융대에 조성된 경리청 창고와 선혜청 창고와 연관이 있는 經理廳契와 宣惠廳契만 존재하였다.[134]

---

129) 《승정원일기》 529책, 경종 1년 2월 27일 무오.

130) 海東村・蘆原・東十里・加五里에 소재한 양향청 소속의 公田이 대상이 되었다. (《승정원일기》 529책, 경종 1년 2월 27일 무오.)

131) 靑水洞은 행정적으로는 沙阿里契와 관련이 있다. 영조 43년(1767) 《승정원일기》 기사에는 沙阿里契 孫家亭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1263책, 영조 43년 1월 25일 경인.) 손가정과 청수동은 현재의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마을로 하천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위치하였다. 즉, 손가정과 청수동의 민호는 행정적으로는 사아리계에서 관리했을 것이다.

132) 《萬機要覽》 군정3, 摠戎廳 北漢山城.

133) 《승정원일기》 540책, 경종 2년 5월 18일 임인.

134) 경리청계와 선혜청계가 연융대 안의 민호와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경리청 창고와 선혜청 창고가 연융대 안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명칭상 연관성이 있다. 둘째, 광무 7년(1903)에 작성된 《漢城府戶籍》 중 北署 常平坊의 호적에서 경리청계는 부암동, 무계동, 삼계동 등 연융대 안에 있던 마을에서 편제된 민호로 구성되었다. (《漢城府戶籍》.) 선혜청계도 경리청계와

북한산성 내의 민호, 창고와 관련한 계가 설치되는 것은 18세기 중반 연융대가 축성된 이후의 일이었다.

숙종대에 시작된 연융대의 축조는 영조 32년(1756)에 이르러 완료되었다.[135] 연융대가 축성된 시기를 전후로 연융대의 설비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연융대 안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우선, 영조 26년(1750)에는 북한산성의 업무를 관장하던 경리청을 폐지하고 총융청으로 이관하였다. 이와 함께 도성 내에 있던 총융청 본청을 연융대로 옮겼다.[136] 또한, 연융대 안 민호 중 50인을 抄出하여 군영에 入番하게 하였다.[137] 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군사 방어 시설로서 연융대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군영을 이설하고 본격적으로 관리하고자 했으나 연융대는 산지 지형이 많아 민호 밀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총융청 본청이 이설된 이후 영조 30년(1754)에는 연융대 내에 모민책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38] 실질적으로 연융대를 지원하는 민호가 있어야 군사 방어 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거주여건이 열악한 환경상 모민된 민호가 안집하기는 어려웠다.

조정은 연융대의 민호를 안집시키기 위해 민호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영조 30년(1754)에는 三南의 藥丸契 및 海西 지방의 銃藥丸契, 曝白契, 燻造契의 재원을 연융대 민호에게 옮겨주었다.[139] 각종 貢人契의 재원을 활용해 지원함으로써 연융대에 민호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140] 연융대에 지원책을 마련함

비슷했을 것이다.

135) 연융대의 축성 공사는 숙종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거셌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영조 4년(1728)에 戊申亂을 계기로 도성 수비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 이후 영조 32년(1756) 축성을 완료하였다. (이은주, 2016 〈조선후기 蕩春臺城 축성과 鍊戎臺 공간의 성격 변화〉,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12쪽.)

136) 총융청 본청은 원래 북부 鎭長坊에 있었는데, 영조 26년(1750) 彰義門 밖 연융대로 옮겨 설치하였다. (《東國輿地備考》 권1, 京都 武職公署.)

137) 《비변사등록》 119책, 영조 25년 2월 16일 갑오; 이은주, 앞의 논문, 27쪽.

138) "卽今第一急務, 在於募聚人民, 而營底旣無生理之資, 又無耕作之土, 雖欲募聚, 有不可得, 非小悶也." (《승정원일기》 1133책, 영조 30년 11월 20일 을미.)

139) 《승정원일기》 1133책, 영조 30년 11월 20일 을미.

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은 정조대 《弘齋全書》에도 잘 드러난다.

> 摠營을 平倉에 설치한 것과 같은 일은 도성을 보조하고 보호하는 좋은 방책이 되었다. 군영을 설치하기 위해선 백성을 모집하고[募民], 백성을 모집하기 위해선 藥丸契를 옮겨야 했다. (이로써) 북한산성에서부터 도성까지 사람과 집이 들어차고 關防도 더욱 엄중해졌다.[141]

《홍재전서》의 내용을 통해 영조~정조대에도 북한산성과 연융대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영조 4년(1768)에는 북한산성에 오래 거주한 승려에게 帖을 내려주거나 영조 24년(1748)에는 북한산성과 총융청이 관할하는 구역 내에 모민하여 경지를 개간하면 稅를 면해주는 등 북한산성과 연융대와 관련해 민호를 안정적으로 거주시키기 위한 방책들이 시행되었다.[142] 또한, 북한산성 내의 삼군문의 창고에 敎鍊官을 각 1원씩 증설하는 등 북한산성 내의 설비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143] 이와 같이 18세기 중후반에는 북한산성과 연융대, 도성을 잇는 구간이 개발되고 관리 체계가 계속 정비되었다.

북한산성과 연융대가 정비되면서 군사 방어 기능이 강화되는 18세기 중후반에 訓倉契・御倉契・禁倉契가 편제되었다. 북한산성이 축조될 당시에 이미 북한산성 내에 창고가 만들어지고 민호를 한성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으나, 이와 관련한 계가 편제된 것은 북한산성과 연융대의 관리가 강화되던 18세기 중후반이었다. 총융청이 이설되고 실질적으로 민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던 시기에 이르러 계를 편제한 것이다. 즉, 북한산성 내의 삼군문의 창고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訓倉契・御倉契・禁倉契는 18세기 중후반에 북한산성과 연융대에 대한 관리

---

140) 藥丸契・銃藥丸契・曝白契・燻造契는 한성부의 행정단위로서의 계와는 다른 성격의 계이다. 한성부의 계는 호구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행정단위인 데에 비해 이 네 계는 각종 貢人들이 물품을 관청에 조달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행정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호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과는 무관하였고 《호구총수》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141) 《弘齋全書》 권13, 序引 軍器引.

142) 《萬機要覽》 군정3, 摠戎廳 募民養兵.

143) 《萬機要覽》 군정3, 摠戎廳 北漢山城.

와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증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융대의 설치와 더불어 도성의 동북쪽을 방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도성의 동북쪽에 위치한 城北洞에도 민호가 모집되었다. 영조 41년(1765)에 영의정 洪鳳漢은 성북동에 민호를 모집하고 근처의 둔전을 매입해 창고를 설치하여 민호가 창곡에 의지해 살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144] 도성의 북쪽 지역의 군사 방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아래 연융대를 축조하고, 도성의 동북쪽도 산성을 축성하지는 않더라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어영청 창고를 설치하고 稅를 감해주는 조건으로 민호를 모집하고 계로 편제하였다.[145]

東部의 御倉契는 어영청 창고를 성북동에 설치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영청 창고를 설치한 목적이 성북동에 민호를 모집하여 살게 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도성의 동북쪽에 민호가 증가한 것이 계가 편제되는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추동된 정책적인 목적은 도성의 군사 방비를 강화하는 것에 있었다.

다만, 성북동 역시 연융대 안과 마찬가지로 거주여건이 열악하여 민호가 안집하여 마을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영청 창고를 설치하였으나, 어영청의 재원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146] 민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조정에서 별도의 지원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연융대와 마찬가지로 燻造契와 曝白契를 활용해 민호를 경제적으로 보조하게 하였다.[147] 각종 공인계의 재원을 이용해 민호를 안집시키고자 한 것이다.

숙종대부터 영조, 정조대까지 도성 북쪽의 군사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북한산성과 연융대를 축성하고 군영과 창고를 설치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그 방책 중 하나였다. 이와 더불어 민호를 모민하여 안집시키는 것도 실질적으로 군사 방어 시설을

---

144) 《승정원일기》 1242책, 영조 41년 4월 17일 임술.
145) 《영조실록》 권105, 영조 41년 4월 17일 임술.
146) 《城北洞曝白燻造契完文》에는 둔진을 두었음에도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 주민이 생계가 형편없다고 하였다. (《城北洞曝白燻造契完文》.)
147) 《城北洞曝白燻造契完文》.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되었다. 이를 위해 연융대와 성북동에 민호의 생계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도성의 동북쪽의 마을에서는 민호를 모집하여 경제적으로 북한산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한성부의 동부와 북부에도 호구 수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이는 실제로 민호가 증가한 것이기도 했고, 군사 방어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호구가 늘어난 결과이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계가 편제되기도 했다.

요컨대 18세기에는 북한산성과 연융대가 축조되면서 도성 북쪽의 민호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訓倉契·御倉契·禁倉契가 편제되고 북한산성과 관련한 계를 北部 常平坊을 신설하여 소속시키고, 동부의 계도 仁昌坊과 崇信坊에 소속시키면서 동부와 북부의 민호 파악이 철저해졌다.[148] 18세기에 군사 방어 시설을 설치한 것이 18세기 중후반에 동부와 북부의 방계 체계를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18세기에는 도성의 동북쪽과 서북쪽 지역에 왕실의 능묘나 각종 관청, 군영과 관련 있는 시설들이 설치되면서 민호를 안집시켜 동원하고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군사 방어 시설이 설치되면서 행정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증폭되었다. 이에 동부와 북부에도 방과 계가 편제되면서 성저십리도 도성 안과 같은 방계 체계가 체계화되었다. 이렇게 동부와 북부의 방계 체계 정비에는 왕실의 능묘나 군사 방어 시설의 설치 등 국가 중요 시설의 증가로 인한 국가의 활용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18세기 성저십리 동부와 북부의 방계 체계 정비는 국가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한성부의 '수도'로서의 특징이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치·경제·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가의 의도가 도시 운영과 민호의 관리에 복합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전통시대 수도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의 영향력이 성저십리에 미치는 정도가 강화되는 것이 18세기의 한성부의 모습이었다.

---

148) 소속된 방이 없었던 계가 방에 소속되게 된 것은 정조 12년(1788)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승정원일기》 1647책, 정조 12년 10월 13일 신축.)

맺 음 말

한성부 성저십리에 있어 18세기는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경관이 변화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민호의 관리 체계도 정비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선후기 한성부의 坊契 체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한성부의 성격을 주로 '상업도시'로 규정했던 것에서 나아가 정치·경제·군사의 중심으로서 국가의 정책이 주요하게 작용한 '수도' 한성부의 모습에 주목하고자 했다. 특히 계가 편제되고 방계 체계가 성립하는 현상의 의미를 한성부가 수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한성부의 기초 행정단위인 계는 17세기 초반에 도성 안에서 발생하였다. 이후 순차적으로 경강변에 위치한 마을의 민호와 동부·북부가 관리하는 민호까지 계로 편제되었다. 18세기 중반 영조대까지 한성부의 기초 행정단위는 모두 계로 바뀌었고 그 후 정조대까지 약 30년 동안 계가 상위 단위인 방에 속하는 방계 체계가 정비되었다. 방계 체계가 정비되는 순서는 계와 마찬가지로 도성 안, 경강변, 동부와 북부 관할 구역의 순이었다. 같은 성저십리라고 하더라도 동부와 북부의 민호가 도성 안과 같은 행정단위로 편제되는 것은 경강변의 민호와 최대 한 세기 정도의 시간 차가 있었다.

한성부에서 방계 체계가 정비된 것은 17세기 이후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행정 체계 정비와 맥락을 같이 한 것이었다. 다만, 한성부에서는 방과 계를 행정단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달랐다. 당초 한성부에서 계를 사용한 이유는 부세를 기준으로 민호를 편제하는 것이 한성부의 부세 체제와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한성부에 戶稅의 종류가 다양하고 부세하는 기관이 밀도 높게 존재하였다. 다만, 특정한 부세를 기준으로 계가 편제되기도 했지만, 기존부터 있던 마을이나 里를 기준으로 계가 편제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성부는 민호가 증가해 관리나 부세의 필요성이 생기는 등 다양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계를 증설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했다.

한성부, 특히 도성 안에서 계가 기초 행정단위가 되면서 민호를 관리

하는 단위가 세분되었다. 다만, 민호가 적고 부세의 필요성도 적었던 성저십리에서는 단위가 도성 안만큼 세분되지 않고 계의 개수도 적었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성저십리에도 다양한 단위의 계가 증설되고 방계 체계도 정비되고 있었다. 도성 안과 성저십리 모두 민호의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던 것이다.

성저십리에서 민호 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호구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저십리, 특히 동부나 북부와 같이 18세기에 들어 호구 수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던 부에 계를 설치했다는 데에서 호구의 증가가 방계 체계가 성립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부와 북부는 환경상 민호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워 민호 수, 즉 실제 거주민 수가 호구 수 변동과 계 편제의 원인이 되지는 못하였다. 민호 수 이외의 요소가 동부와 북부의 호구 수가 증가하고 방계 체계가 성립하는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동부와 북부에 계가 편제된 배경에는 18세기에 이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국가 중요 시설들이 설치된 것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군사 방어 시설인 북한산성, 연융대와 왕실의 능묘 시설들이 도성 밖 성저십리에 설치되었다. 18세기에 국가의 필요에 따라 한성부 성저십리의 경관이 변화하였고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렇게 민호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방계 체계가 정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8세기 동부와 북부의 방계 체계 정비는 다양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국가의 의도가 도시의 변형과 관리에 복합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수도 한성부의 모습이었다. 또한, 이러한 국가의 영향력이 성저십리에 미치는 정도가 강화되는 것이 18세기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8세기를 중심으로 한성부의 방계 체계가 성립하는 의미를 살펴 18세기 한성부는 국가의 의도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수도’로서의 특징을 지닌다고 보았다. 조선시대 한성부는 중국의 도성과 같이 구획이 명확하게 정해진 방리를 편제하거나 도읍 내의 인구

이동을 제한하는 등 폐쇄적인 도시를 운영하지는 않았다.[149] 즉, 한성부에서는 도시 운영에 있어 국가의 의도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왕실과 국가의 중심지로서 도성과 이를 둘러싼 성저십리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도시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민호를 동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도시를 운영하는 데에 국가의 의도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한성부가 '수도'로서 가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수도의 모습은 사회경제적인 변동에 따른 도시 인구의 경제 활동의 변화나 役制의 변화 등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한성부의 모습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관점에서 민호를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하는 것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민호가 대응하고 이에 따라 제도가 변하는 것은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적게 부각된 국가와 행정적인 관점에서 전통 수도의 모습을 고찰하였다. 국가의 행정력이 크게 작용하는 전통 수도로서의 모습은 18세기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여전히 한성부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었다.

방계 체계가 정비되는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체계의 구체적인 실상을 더욱 세밀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이다. 계를 구성하는 민호는 어떻게 정해지고 부세는 어떤 원리에 의해 차출되었는지, 상위 단위인 부와 방 그리고 계의 명령 계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등 실제 운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한성부의 실상을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부와 북부의 민호 관리가 강화되는 복합적인 배경을 밝히고자 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왕실의 능묘와 군사 방어 시설의 설치라는 두 가지 배경만 제시하여 논의가 다소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동부와 북부에 민호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적 필요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약한다.

---

149) 예를 들어, 중국의 도읍에서 坊墻制가 시행된 것은 도성 안 주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여 인구를 관리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박한제, 앞의 책, 294쪽.)

참 고 문 헌

Ⅰ. 사료

1. 연대기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2. 법전・의궤 등 관찬자료

《經國大典》
《東國摠錄》 (K2-207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萬機要覽》
《墓所都監儀軌》 (K2-231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奎13925-v.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北部帳戶籍》 (奎1931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思悼世子墓所都監儀軌》 (奎 1360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山陵都監儀軌》 (K2-232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璿源譜略修正儀軌》 (奎1408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續大典》
《御製守城綸音》 (奎375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禮葬都監儀軌》 (K2-259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壯勇營故事》 (K2-336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典律通補》
《度支志》
《戶口摠數》 (奎1602-v.1-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弘齋全書》

〈宜嬪墓圖形〉 (RD0440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 지리지

《大東地志》 (古4790-37-v.1-1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東國輿地備考》(古4790-10-v.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東國輿地志》(古4790-51-v.1-1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新增東國輿地勝覽》(奎貴1932-v.1-2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 고지도

《韓國 五萬分之一 地形圖》(국립중앙박물관)
《大東輿地圖》(奎10333-v.1-2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都城大地圖〉(서울역사14165, 서울역사박물관)
〈都城圖〉(古軸4709-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司僕寺箭串牧場圖〉(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四山禁標圖〉(서울역사000242, 서울역사박물관)

5. 기타

《城北洞曝白燻造契完文》(서울역사003732, 서울역사박물관)
〈北漢山城禁衛營移建記碑〉(경기도 시도유형문화재)

6. 데이터베이스

인하대학교 근대호적 연구실, 1903 《漢城府戶籍》

Ⅱ. 단행본

강제훈 외, 2018 《서울 洞의 역사 성북구 제3권 보문동・안암동・종암동》, 서울역사편찬원.
고동환, 1998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_____, 2007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김덕진, 1999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국학자료원.
김백영 외, 2021 《도시 주거 변천의 파노라마 장위동》, 서울역사박물관.
김우진, 2022 《肅宗의 對淸認識과 首都圈 防禦政策》, 민속원.
문화재청, 2007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추진 종합학술연구》.
박한제, 2019 《중국 중세도성과 호한체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2013 《서울사료총서 12 국역 경성부사_제2권》.
손정목, 1988 《朝鮮時代都市社會硏究》, 일지사.
오영교, 2001 《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 硏究》, 혜안.
이근호 외, 1998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정요근 외, 2022 《서울 洞의 역사 도봉구 제1권》, 서울역사편찬원.
조선총독부, 한국건설기술원 역, 2011 《근대 수문조사 고문서 번역 시리즈 9 치수 및 수리 답사서(1920년)》, 국토해양부.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고문서집성 119 咸陽 安義 密陽朴氏 朴明榑宗家 古文書》.
호적대장 연구팀, 2003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Ⅲ. 논문

1. 학위논문

김준형, 1982 〈朝鮮後期 面里制의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현주, 2002 〈朝鮮末 日帝下 서울의 下部行政制度 연구: 町洞制와 總代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슬기, 2017 〈서울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신흥부촌 형성 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진, 2021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의 변화 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주, 2016 〈조선후기 蕩春臺城 축성과 鍊戎臺 공간의 성격 변화〉,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연구논문

고동환, 2005 〈조선후기 경강지역 행정편제의 변동과 인구추세〉, 《서울학연구》 2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_____, 2015 〈조선후기 서울 삼문(三門) 밖 지역의 특성〉, 《서울학연구》 59, 서울역사편찬원.
김건태, 2023 〈민고 계 그리고 왕토사상〉, 《대동문화연구》 12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김미성, 2020 〈조선 현종~숙종 연간 기후 재난의 여파와 유민(流民) 대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118, 한국역사연구회.
김소은, 1999 〈1610년 호패청 작성 치부자료〉, 《고문서연구》 15, 한국고문서학회.
김지영, 2008 〈조선후기 국왕 행차와 거둥길〉, 《서울학연구》 3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박진우, 1988 〈朝鮮初期 面里制와 村落支配의 강화〉, 《韓國史論》 2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박희진, 2014 〈군제 개편이 17세기 서울의 인구와 상업 발전에 미친 영향〉, 《역사와 현실》 94, 한국역사연구회.
배재훈, 2019 〈서울 은평뉴타운 '靑覃寺' 명문 기와 출토 건물지의 성격 검토〉, 《서울과 역사》 101, 서울역사편찬원.
송양섭, 2011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계방의 출현 -제역 및 제역촌과 관련하여-〉, 《역사와 담론》 59, 호서사학회.
_____, 2021 〈19세기 巨濟 舊助羅里의 부세운영과 촌락사회의 동향〉, 《대동문화연구》 11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양보경, 1994 〈서울의 공간확대와 시민의 삶〉, 《서울학연구》 1, 서울

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오영교, 1994 〈17世紀 鄕村對策과 面里制의 運營〉, 《동방학지》 8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유승희, 2013 〈조선후기 한성부의 四山 관리와 松禁 정책〉, 《이화사학연구》 46, 이화사학연구회.
이근호, 2020 〈조선후기 성북 지역 陵·園·墓 조성과 그 의미〉, 《북악사론》 12, 북악사학회.
이왕무, 2014 〈조선후기 수도권 방위체제의 정비와 군사도시화 경향〉, 《軍史》 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은주, 2017 〈조선후기 연융대 공간의 군사적 기능과 도성 배후기지화〉, 《서울과 역사》 96, 서울역사편찬원.
이태진, 1995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 양상〉, 《서울학연구》 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전민영, 2017 〈19세기 巨濟 舊助羅里 마을고문서와 공동생활 방식 - 旅客主人·漁條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 《古文書硏究》 51, 한국고문서학회.
정요근, 2020 〈고려~조선 시대 院 시설 유적의 특성과 院 시설의 유형 분류〉, 《사학연구》 140, 한국사학회.
정정남, 2015 〈18세기 이후 한성부 북부 6坊(현 북촌)의 주거 停滯的 구조〉, 《서울학연구》 6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최주희, 2012 〈조선후기 왕실·정부기구의 재편과 서울의 공간구조〉, 《서울학연구》 4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홍금수, 2006 〈箭串場의 景觀變化〉, 《문화역사지리》 18(1), 문화역사지리학회.
홍순민, 2021 〈조선후기 白雲洞川 중상류 유역 洞과 坊契의 구성〉, 《서울과 역사》 108, 서울역사편찬원.

부　　록

[附表 1] 18세기 한성부 部별 坊과 契 변동

契	部	구분	坊	
			《어제수성윤음》	《호구총수》
把子廛契	中部	성내	貞善坊	貞善坊
古兵曺契		성내	貞善坊	貞善坊
衣廛一契		성내	貞善坊	貞善坊
衣廛二契		성내	貞善坊	貞善坊
大廟洞契		성내	貞善坊	貞善坊
水門洞契		성내	貞善坊	貞善坊
金萬年契		성내	貞善坊	貞善坊
林巳孫契		성내	貞善坊	貞善坊
非老廛契		성내	貞善坊	貞善坊
敦寧上契		성내	貞善坊	貞善坊
敦寧下契		성내	貞善坊	貞善坊
下米廛契		성내	貞善坊	貞善坊
大寺洞一碑契		성내	寬仁坊	寬仁坊
大寺洞二碑契		성내	寬仁坊	寬仁坊
大寺洞三碑契		성내	寬仁坊	寬仁坊
大寺洞四碑契		성내	寬仁坊	寬仁坊
忠勳府內契		성내	寬仁坊	寬仁坊
典醫監洞契		성내	堅平坊	堅平坊
禁府內契		성내	堅平坊	堅平坊
禁府後洞契		성내	堅平坊	堅平坊
中魚物廛一碑契		성내	堅平坊	堅平坊
中魚物廛二碑契		성내	堅平坊	堅平坊
日影臺契		성내	瑞麟坊	瑞麟坊
朴井契		성내	瑞麟坊	瑞麟坊
鷄児廛契		성내	瑞麟坊	瑞麟坊
典獄內契		성내	瑞麟坊	瑞麟坊
典獄後洞契		성내	瑞麟坊	瑞麟坊
鐘樓西邊契		성내	瑞麟坊	瑞麟坊
沙器廛契		성내	瑞麟坊	瑞麟坊
捕盜廳契		성내	瑞麟坊	瑞麟坊
古索井契		성내	瑞麟坊	瑞麟坊
相思洞契		성내	壽進坊	壽進坊
濟用下契		성내	壽進坊	壽進坊
壽進宮內契		성내	壽進坊	壽進坊
壽進宮內行廊契		성내	壽進坊	壽進坊
松峴契		성내	壽進坊	壽進坊
磵洞契		성내	壽進坊	壽進坊
上魚物廛契		성내	壽進坊	壽進坊

靑城君契		성내	壽進坊	壽進坊
司僕前契		성내	壽進坊	壽進坊
司僕川邊契		성내	壽進坊	壽進坊
盖井契		성내	壽進坊	壽進坊
鐘縣屛門契		성내	壽進坊	壽進坊
上米廛契		성내	壽進坊	壽進坊
貫子洞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原州主人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張仇談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淸州主人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朴巳守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紙廛一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朴乃宗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鹽廛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丁萬碩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辛享孫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河順元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昌廛行廊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昌廛中路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粉廛中路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笠廛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義城正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朴戒孫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曹世弘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廣州主人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鞋廛一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琵琶洞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咸平主人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石井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方宗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徐千守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兪士益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水標東邊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張萬戶契		성내	長通坊	長通坊
白笠廛契		성내	長通坊	(계 없음)
黑笠廛契		성내	長通坊	(계 없음)
紙廛二契		성내	(계 없음)	長通坊
鞋廛二契		성내	(계 없음)	長通坊
布廛契		성내	慶幸坊	慶幸坊
漢原宮內契		성내	慶幸坊	慶幸坊
漢原東邊契		성내	慶幸坊	慶幸坊
漢原西邊契		성내	慶幸坊	慶幸坊
吳順德契		성내	慶幸坊	慶幸坊
四巨里契		성내	慶幸坊	慶幸坊
漢城府內契		성내	澄淸坊	澄淸坊
漢城府後洞契		성내	澄淸坊	澄淸坊

典艦司契		성내	澄淸坊	澄淸坊
板井契		성내	澄淸坊	澄淸坊
吏曺內契		성내	澄淸坊	澄淸坊
戶曺內契		성내	澄淸坊	澄淸坊
古禮曺契		성내	澄淸坊	澄淸坊
卞宗堅契		성내	澄淸坊	澄淸坊
備邊司契		성내	澄淸坊	澄淸坊
豆錫洞契		성내	澄淸坊	澄淸坊
戶曺後洞契		성내	澄淸坊	澄淸坊
宗廟洞契	東部	성내	蓮花坊	蓮花坊
分六契		성내	蓮花坊	蓮花坊
中路契		성내	蓮花坊	蓮花坊
金衆契		성내	蓮花坊	蓮花坊
蓮池洞契		성내	蓮花坊	蓮花坊
連一契		성내	蓮花坊	蓮花坊
連二契		성내	蓮花坊	蓮花坊
連三契		성내	蓮花坊	蓮花坊
川邊契		성내	蓮花坊	蓮花坊
北二契		성내	蓮花坊	蓮花坊
一契		성내	(계 없음)	景慕宮坊
二契		성내	(계 없음)	景慕宮坊
成均館契		성내	崇敎坊	崇敎坊
崇敎一契		성내	崇敎坊	(계 없음)
於義洞契		성내	建德坊	建德坊
建德坊契		성내	建德坊	(계 없음)
昌善洞一契		성내	昌善坊	昌善坊
昌善洞二契		성내	昌善坊	昌善坊
東學洞契		성내	昌善坊	昌善坊
東學內契		성내	昌善坊	昌善坊
小川邊契		성내	昌善坊	昌善坊
崇信洞契		성외	崇信坊	崇信坊
新設契		성외	(방 없음)	崇信坊
伐里契		성외	(방 없음)	崇信坊
加五里契		성외	(방 없음)	崇信坊
水踰村契		성외	(방 없음)	崇信坊
安巖洞契		성외	(방 없음)	崇信坊
陵洞契		성외	(방 없음)	崇信坊
沙阿里契		성외	(방 없음)	崇信坊
牛耳契		성외	(방 없음)	崇信坊
御倉契		성외	(계 없음)	崇信坊
鐘巖里契		성외	(계 없음)	崇信坊
仁昌洞契		성외	仁昌坊	仁昌坊
往十里一契		성외	(방 없음)	仁昌坊
私契		성외	(방 없음)	仁昌坊
淸凉里契		성외	(방 없음)	仁昌坊
踏十里契		성외	(방 없음)	仁昌坊

祭基里契		성외	(방 없음)	仁昌坊
中浪浦契		성외	(방 없음)	仁昌坊
典農里契		성외	(방 없음)	仁昌坊
馬場里契		성외	(방 없음)	仁昌坊
長位里契		성외	(방 없음)	仁昌坊
往十里二契		성외	(방 없음)	仁昌坊
靑寧尉契	南部	성내	明哲坊	明哲坊
御倉契		성내	明哲坊	明哲坊
雙里門洞契		성내	明哲坊	明哲坊
水口門內契		성내	明哲坊	明哲坊
南小洞契		성내	明哲坊	明哲坊
墨井洞契		성내	薰陶坊	薰陶坊
泥峴契		성내	薰陶坊	薰陶坊
竹廛洞契		성내	薰陶坊	薰陶坊
政承契		성내	薰陶坊	薰陶坊
朴井契		성내	薰陶坊	薰陶坊
苧廛洞契		성내	薰陶坊	薰陶坊
下乭地坊契		성내	薰陶坊	薰陶坊
鑄字洞契		성내	薰陶坊	薰陶坊
惠民署契		성내	薰陶坊	薰陶坊
瓦有豆里契		성내	樂善坊	樂善坊
真梳里契		성내	樂善坊	樂善坊
倭館洞契		성내	樂善坊	樂善坊
禁倉契		성내	樂善坊	樂善坊
毛廛契		성내	廣通坊	廣通坊
大多坊北邊契		성내	廣通坊	廣通坊
小多坊南邊契		성내	廣通坊	廣通坊
小多坊北邊契		성내	廣通坊	廣通坊
軍器寺越邊契		성내	廣通坊	廣通坊
西行廊上契		성내	廣通坊	廣通坊
西行廊下契		성내	廣通坊	廣通坊
成川契		성내	廣通坊	廣通坊
瓮垈里門契		성내	廣通坊	廣通坊
孫福洞契		성내	廣通坊	廣通坊
小川邊契		성내	廣通坊	廣通坊
東行廊契		성내	廣通坊	廣通坊
掌樂內契		성내	明禮坊	明禮坊
明禮洞契		성내	明禮坊	明禮坊
部契		성내	明禮坊	明禮坊
仇里介契		성내	大平坊	大平坊
下弘門契		성내	大平坊	大平坊
善山契		성내	大平坊	大平坊
甫十內契		성내	大平坊	大平坊
甫十外契		성내	大平坊	大平坊
韓守堅契		성내	大平坊	大平坊
水下洞契		성내	大平坊	大平坊

虛屛門契		성내	大平坊	大平坊
會賢洞契		성내	好賢坊	會賢坊
長興洞契		성내	好賢坊	會賢坊
儲慶宮內契		성내	好賢坊	會賢坊
松峴契		성내	好賢坊	會賢坊
部越邊契		성내	好賢坊	會賢坊
小公洞契		성내	好賢坊	會賢坊
西小門越邊契		성내	好賢坊	會賢坊
二間屛門契		성내	好賢坊	會賢坊
宜山尉契		성내	好賢坊	會賢坊
石橋上契		성내	誠明坊	誠明坊
石橋下契		성내	誠明坊	誠明坊
蓮城尉契		성내	誠明坊	誠明坊
梨太院契		성외	屯之坊	屯之坊
西氷一契		성외	屯之坊	屯之坊
瓦署契		성외	屯之坊	屯之坊
典牲內契		성외	屯之坊	屯之坊
典牲外契		성외	屯之坊	屯之坊
西氷二契		성외	屯之坊	屯之坊
靑坡契		성외	屯之坊	屯之坊
之於屯契		성외	屯之坊	屯之坊
豆毛浦契		성외	豆毛坊	豆毛坊
神堂里契		성외	豆毛坊	豆毛坊
水鐵里契		성외	豆毛坊	豆毛坊
新村里契		성외	豆毛坊	豆毛坊
箭串一契		성외	豆毛坊	豆毛坊
箭串二契		성외	豆毛坊	豆毛坊
箭串中村契		성외	豆毛坊	豆毛坊
漢江契		성외	漢江坊	漢江坊
夢賚亭契		성외	漢江坊	漢江坊
鑄城里契		성외	漢江坊	漢江坊
大平館契	西部	성내	養生坊	養生坊
倉洞契		성내	養生坊	養生坊
松峴契		성내	養生坊	養生坊
社禝洞契		성내	仁達坊	仁達坊
內需司內契		성내	仁達坊	仁達坊
內需司內行廊契		성내	仁達坊	仁達坊
壽城宮內契		성내	仁達坊	仁達坊
分繕工內契		성내	仁達坊	仁達坊
奉常寺內契		성내	仁達坊	仁達坊
內贍內契		성내	仁達坊	仁達坊
司醞洞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都染洞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十字閣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鐘閣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唐皮洞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夜晝介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工曺後洞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筆廛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司譯院內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中樞府內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律學廳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刑曺內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司憲府內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兵曺內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禮曺內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壽城宮越邊契		성내	積善坊	積善坊
豆錫洞契		성내	餘慶坊	餘慶坊
西學洞契		성내	餘慶坊	餘慶坊
西學內契		성내	餘慶坊	餘慶坊
長生洞契		성내	餘慶坊	餘慶坊
新門內契		성내	餘慶坊	餘慶坊
海豊君契		성내	餘慶坊	餘慶坊
繕工內契		성내	餘慶坊	餘慶坊
東嶺洞契		성내	餘慶坊	餘慶坊
毛廛契		성내	餘慶坊	餘慶坊
刀子洞契		성내	餘慶坊	餘慶坊
聚賢洞契		성내	皇華坊	皇華坊
小貞洞契		성내	皇華坊	皇華坊
西小門內契		성내	皇華坊	皇華坊
西小門外契		성외	盤石坊	盤石坊
米廛下契		성외	盤石坊	盤石坊
藥田契		성외	盤石坊	盤石坊
古巡廳契		성외	盤石坊	盤石坊
米廛上契		성외	盤石坊	盤石坊
蓮池契		성외	盤石坊	盤石坊
租田契		성외	盤石坊	盤石坊
成朔州契		성외	盤石坊	盤石坊
石橋契		성외	盤石坊	盤石坊
四巨里契		성외	盤石坊	盤石坊
桃楮洞契		성외	盤石坊	盤石坊
兪判府事契		성외	盤松坊	盤石坊
京營庫契		성외	盤松坊	盤松坊
茵匠里契		성외	盤松坊	盤松坊
水芹沓契		성외	盤松坊	盤松坊
曹判府事契		성외	盤松坊	盤松坊
阿峴契		성외	盤松坊	盤松坊
權政承契		성외	盤松坊	盤松坊
盧僉正契		성외	盤松坊	盤松坊
池下契		성외	盤松坊	盤松坊
靑城君契		성외	盤松坊	盤松坊
車子里契		성외	盤松坊	盤松坊

靑坡一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靑坡二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靑坡三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靑坡四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玉亭里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瓷里上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瓷里下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桃花洞內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沙村里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萬里倉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孔德里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麻浦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新村里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灘項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賑恤廳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東門外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新倉內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兄弟井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槨契(桃花洞外契)		성외	龍山坊	龍山坊
靑坡五契		성외	龍山坊	(계 없음)
御營廳倉契		성외	龍山坊	(계 없음)
瓷里中契		성외	(계 없음)	龍山坊
唐人里契		성외	西江坊	西江坊
倉前里契		성외	西江坊	西江坊
黑石里契		성외	西江坊	西江坊
下中里契		성외	西江坊	西江坊
上水溢里契		성외	西江坊	西江坊
新井里契		성외	西江坊	西江坊
新水鐵里契		성외	西江坊	西江坊
舊水鐵里契		성외	西江坊	西江坊
栗島契		성외	西江坊	西江坊
下水溢里契		성외	(계 없음)	西江坊
司宰監上牌契	北部	성내	順化坊	順化坊
司宰監下牌契		성내	(계 없음)	順化坊
安國洞契		성내	安國坊	安國坊
齋洞契(嘉會坊契)		성내	嘉會坊	嘉會坊
玉井後洞契		성내	義通坊	義通坊
玉井里契		성내	義通坊	義通坊
迎秋門契		성내	義通坊	義通坊
部契(觀光坊契)		성내	觀光坊	觀光坊
中學內契		성내	觀光坊	觀光坊
議政府內契		성내	觀光坊	觀光坊
三淸洞契(鎭長坊契)		성내	鎭長坊	鎭長坊
桂生洞契(陽德坊契)		성내	陽德坊	陽德坊
舊司圃署契(俊秀坊契)		성내	俊秀坊	俊秀坊
苑洞契(廣化坊契)		성내	廣化坊	廣化坊

宣惠廳契		성외	(방 없음)	常平坊
經理廳契		성외	(방 없음)	常平坊
造紙署契		성외	(방 없음)	常平坊
訓倉契		성외	(계 없음)	常平坊
禁倉契		성외	(계 없음)	常平坊
御倉契		성외	(계 없음)	常平坊
阿峴契		성외	(방 없음)	延禧坊
延禧宮契		성외	(방 없음)	延禧坊
細橋里一契		성외	(방 없음)	延禧坊
加佐洞一契		성외	(방 없음)	延禧坊
甑山里契		성외	(방 없음)	延禧坊
城山里契		성외	(방 없음)	延禧坊
水色里契		성외	(방 없음)	延禧坊
鵂巖里契		성외	(방 없음)	延禧坊
舊里契		성외	(방 없음)	延禧坊
望遠亭一契		성외	(방 없음)	延禧坊
望遠亭二契		성외	(방 없음)	延禧坊
合井里契		성외	(방 없음)	延禧坊
汝矣島契		성외	(방 없음)	延禧坊
細橋里二契		성외	(계 없음)	延禧坊
加佐洞二契		성외	(계 없음)	延禧坊
望遠亭三契		성외	(계 없음)	延禧坊
弘濟院契		성외	(방 없음)	延恩坊
梁哲里契		성외	(방 없음)	延恩坊
佛光里契		성외	(방 없음)	延恩坊
葛古介契		성외	(방 없음)	延恩坊
驛契		성외	(방 없음)	延恩坊
私契		성외	(방 없음)	延恩坊
新寺洞契		성외	(방 없음)	延恩坊
末屹山契		성외	(방 없음)	延恩坊

※ 契 명칭은 《戶口摠數》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Abstract

The Re-organization and the Background of *Hansŏngbu*'s *Bang-Gye* System in the 18th century

Jung, Dahy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how and why the 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Hansŏngbu* (漢城府), the capital city of *Chosŏn,* had changed significantly in the 18th century. When pre-modern societies re-organize their administration units, the main purpose of the action is to fulfill the nation's need of figuring out its accurate population. In particular, *Hansŏngbu*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city and its people as it was the central part of the country. While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e reason for *Hansŏngbu*'s administrative change from the growth of "commercial cities" through the socioeconomic lens, this study goes further and spotlights the nation's administrative need.

In the late Chosŏn period,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Hansŏngbu* consists

of the highest level *Bu* (部); the intermediate level *Bang* (坊); and the lowest level *Gye* (契). The so-called Bang-Gye system was first adopted to the inner side of *Hanyang* Castle (都城, *Dosŏng*) and was expanded to the outer side of the castle in the late 18th century. Not only the inner side but also the outer side of the castle – including *Dong-bu* (東部; Eastern part of *Hansŏngbu*), *Buk-bu* (北部, Northern part of *Hansŏngbu*), and the riverside of Han River (漢江) – followed the Bang-Gye system in tandem with the growing national need of managing its people under one universal system.

For *Hansŏngbu*, capturing the accurate picture of its citizens and having an effective calling out for the state's needs were the reason behind the organization of the Bang-Gye system. Unlike other cities which were using another administrative system with the intermediate level *Myeon* (面) and the lowest level *Li* (里), *Hansŏngbu* needed a more subdivided unit to manage its complicated tax system. The aim was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the citizens with the new system where the subdivided basic unit well fulfills the need.

The increased number of people in the city's census shows the advanced management of people living in *Hansŏngbu*. As the census had le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its taxpayers, *Hansŏngbu* could newly create the Bang-Gye system. Since the mid and late 18th century, the population of the eastern (*Dong-bu)* and northern (*Buk-bu)* parts of *Hansŏngbu* increased and so did the proportion of the two regions out of *Hansŏngbu*. Despite the fact that the eastern and northern parts did not provide the best environment and location to live, the local government's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the population had improved. This suggests that the nation's administrative need of managing the population had increased significantly.

And one of the reasons behind the stronger administrative control of *Hansŏngbu* was the increasing number of major facilities of the nation in the 18th century. Tombs of the royal family and military facilities were built

in the eastern and western parts of *Hansŏngbu*. As more people were needed to manage and support such facilities, the need for the exact census was higher than ever. Under the administrative need, the Bang-Gye system was thoroughly organized and applied to the both inner and outer sides of *Hansŏngbu.*

The organization of the Bang-Gye system suggests the nation's influence in every aspect – politics, economy, and military – on its capital, *Hansŏngbu.* In the 18th century, all across the *Hansŏngbu* was still under such a profound national influence, which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capital cities had not gone yet in the 18th century but coexisted with socioeconomic changes like commerce.

keywords : *Hansŏngbu* (漢城府), the capital, Seoul, the 18th century, *Bu* (部), *Bang* (坊), *Gye* (契)

***Student Number* : 2021-24164**